

2012 전국청소년운영위원회 워크숍

- ▶ 일시: 2012년 8월 8일(수) ~ 10일(금)
- ▶ 장소: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2012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대표자 워크숍 안내

1 | 목 적

- 2012년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사업방향을 제시하고 사업기본계획을 안내함으로써 금년도 사업진행 방향을 운영위원회 청소년들과 공유
- 전국 각 시설별 운영위원회 대표 청소년의 리더십 및 민주시민역량 강화

2 | 개 요

- 일 시 : 2012. 8. 8(수) ~ 8. 10(금)
- 장 소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천안)
- 대 상 : 250명 내외(전국 305개 청소년운영위원회 대표)
※ 각 시설별(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대표 1인
- 주 최 : 여성가족부
- 주 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

일정표

일수	시 간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1 일차	14:00~15:00	접 수	• 참가자 접수 및 숙소배정 등	
	15:00~16:00	여는마당	• 개회식 및 워크숍운영 안내	
	16:00~18:00	관계형성	• 참가자 소개 및 관계형성 프로그램	
	18:00~19:00	석 식	• 저녁식사	
	19:00~20:00	특 강	• 특강 1 _ 민주주의와 청소년참여	
	20:00~22:00	분임토의	• 토론 1 _ 주제별 분임토의	
	22:00~		• 숙소이동 및 취침	
2 일차	07:30~09:00	조 식	• 아침식사	
	09:00~12:00	수련활동	• 리더십 청소년 수련활동 (챌린지코스, 오리엔티어링, 추적놀이)	선택체험
	12:00~14:00	중 식	• 점심 및 휴식	
	14:00~16:00	분임토의	• 토론 2 _ 주제별 분임토의	
	16:00~17:00	특 강	• 특강 2 _ 청소년운영위원회 활성화	
	17:00~18:30	석 식	• 저녁식사	
	18:30~20:30	간담회	• 토론 3 _ 관장님과 함께 만드는 운영위원회	
	20:30~23:00	추억 만들기	• 실내 어울마당	
	22:00~		• 숙소이동 및 취침	
3 일차	07:30~09:00	조 식	• 아침식사	
	09:00~10:00	특 강	• 특강 3 _ 미래사회와 청소년	
	10:00~11:30	분임발표	• ‘토론 1·2 및 토론3(관장님과 함께)’에 대한 종합발표	
	11:30~12:00	폐회식	• 설문지 작성 및 폐회식	
	12:00~	중 식	• 중식 및 귀가	

- 2012년도 운영기본계획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소양교육
 - 2012년도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방향
 - [특강 1] 민주주의와 청소년참여
 - [특강 2] 청소년운영위원회 활성화 실제
 - [특강 3] 미래사회와 청소년

- 리더십 배양 선택체험활동
 - 챌린지코스, 오리엔티어링, 추적놀이 3종 중 1종 선택 참여
 - ※ 선택체험활동 인원배정 선착선 순으로 조정

- 소통체험활동(공동체활동)
 - 참가 청소년 간 관계 형성을 위한 소통체험 활동

- 관장님 및 전문가들과 함께 만들어 보는 청소년운영위원회
 - 전국 우수 청소년수련시설 관장(10인) 및 전문가(3~4명)와 함께 토론을 통한 청소년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 마련

- 다양한 운영위원회 활성화 주제별 분임토론 및 발표

청소년운영위원회 분임 토의

1일차(8/8)

청소년운영위원으로서의 '나' , 그리고 '우리들'

☐ 청·운·위로서의 '나' 와 '친구' 에 대한 탐색, 그리고 공감나누기

- 청소년운영위원이 된 동기와 과정 이야기 나누기
- 청소년운영위원으로 내가 해야 하는 활동
- 청소년운영위원 활동 前과 後의 '나' 와 '친구들'

2일차(8/9)

청소년운영위원 활동과 활동의 장애물 진단

☐ 청·운·위 활동과 활동에서의 어려운 문제들의 원인 찾기

- 청소년운영위원으로서 내가 한 활동과 활동에서 경험한 어려움
- 청소년운영위원으로서 내가 하고 싶은 활동
-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들 의견 나누기

3일차(8/10)

청소년운영위원들이 제안하는 청·운·위 활동(안)

☐ 관장님과 함께 만들어보는 청소년운영위원회

- 청소년운영위원으로서 '내'가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들
-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이 활성화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 우리가 제안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

01	[특강1] 민주주의와 청소년참여 김광진 _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 1
02	[토론1] 주제별 분임토의 I 청·운·위로서로서의 ‘나’ 그리고 ‘우리들’	/ 9
03	[토론2] 주제별 분임토의 II 청·운·위 활동과 활동의 장애물	/ 15
04	[특강2] 청소년운영위원회 활성화 박찬열_홍은청소년문화의 집 관장	/ 21
05	[토론3] 관장님과 함께 만드는 운영위원회 청·운·위가 제안하는‘청·운·위 활동’	/ 31
06	[특강3] 미래사회와 청소년 배규한 _ 국민대학교 교수	/ 37
07	부 록 [부록1] _ 2012년 청소년운영위원회 활성화 계획 [부록2] _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 53 / 55 / 65

특강 1



민주주의와 청소년참여

김광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민주주의와 청소년 참여



김광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1 참여민주주의와 청소년

○ 참여민주주의란?

- ‘모든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한 입장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국민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체제를 말함.
- 민주주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되어야 함. 이런 관점에서 접근한 현대 학자로서는 독일의 하버마스(J. Habermas)를 들 수 있음. 그는 의사소통이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이론에서는 ‘민주주의는 지도자와 국민, 국민과 국민, 과거와 현대가 서로 소통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요지임. 따라서 하버마스의 이론을 빌리자면 소통은 참여의 기본 전제조건임.

○ 청소년 참여란?

- 참여란 자신의 삶의 조건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적 의사결정과정에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을 반영시키려는 노력임.
- 청소년들의 삶의 조건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의 결정과정, 지역사회의 각종 결정, 학교 혹은 가정의 여러 결정과정에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생각과 주장을 가지고 참여하여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임.

○ 청소년이 스스로의 생각과 주장을 가지고 참여하는 두 가지 방식

- 하나는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어른들이 하되 다만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을 충분히 밝히는 기회가 제공하는 형태의 참여임.
- 다른 하나는 단순히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만을 밝히는 데 머물지 않고 의사결정과정, 즉 투표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참여임.

- 두 가지 형태의 참여 중 어느 형태의 참여가 바람직한가는 결정해야 할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다르게 보아야 함. 반드시 어느 형태의 참여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볼 수 없음.

○ 청소년의 풀뿌리 민주주의

- 청소년의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의 측면에서 보면, 도서관운동, 교육운동, 학교급식운동 등 다양한 생활상의 이슈들이 의제로 등장하고 있음.
- 도서관이나 교육, 학교급식과 관련된 운동은 그 사안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안을 해결하는 과정에 청소년·시민이 참여하여 의식을 확장하고 정치주체로 성장하도록 디딤돌을 마련하자는 점에서 풀뿌리민주주의와 맞닿아 있음.
- 도서관이나 놀이터, 공부방, 방과 후 학교 등이 일정한 물리적인 공간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의 관계망을 구성한다면 보육이나 학교급식 등은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사람들을 조직화하면서 민주주의를 실험하는 장이 되고 있음.
- 또한 행정이 주도하는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를 민주적인 공간으로 바꾸려는 노력들도 점점 많이 등장하고 있음. 최근에는 도시계획이나 재개발, 주거권에 개입하려는 운동도 조금씩 활성화되고 ‘미래의 주인’인 청소년들을 지역사회의 주체로 구성하는 운동도 활발해지고 있음.
- 하나의 예로서 천안의 풀뿌리희망재단처럼 지역사회재단을 설립하는 운동도 추진되고 있고, 이런 다양한 흐름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이런 운동이 청소년들의 성장에 필요한 여유를 마련하는 과정을 제공한다는 점임.
-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곧바로 능동적인 정치주체로 변신하기는 어려움. 그런 점에서 풀뿌리운동은 주체들이 성장할 ‘과정’과 ‘여유’를 마련함. 이런 과정과 여유는 소외된 청소년이 자신의 ‘시민됨’을 자각하고 능동적인 정치적 의지를 회복하도록 도움. 그리고 이런 과정은 직접 참여하고 실천하며 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배우게 함.

2

국내, 청소년 참여민주주의의 역사

- 1995년 최우주 학생 강제 보충수업, 자율학습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문제제기 시작
- 이로 인해 pc통신 <하이텔>에 중·고등학생복지회가 태동, 학생인권문제에 대해 열린 공간에서 토론하기 시작함.
- 1998년 교육부가 학생인권선언 제약을 취소하자 중·고등학생복지회는 자체적으로 『중·고등학생인권선언서』를 발표하기도 함.

○ 2000년 두발규제 반대 운동의 물결

- 2000년대 들어 청소년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인터넷 공간이 확장됨. 대표적 청소년 사이트인 채널 텐, 아이두, 사이버유스는 웹연대를 구축하여 본격적으로 청소년 성문제, 선거권문제, 아르바이트 노동문제에 대해 주장하기 시작함.
- 웹연대의 청소년 두발규제 반대운동(노컷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되어 결국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의 내부여론 수렴절차를 거쳐 ‘두발자유화’조치를 내림.

○ 2005년 청소년 거리로 나서다

- 2000년대 초반 들어 청소년들의 산발적인 거리시위가 있었으나 본격적인 권리운동으로서는 2005년의 참여운동이 의미가 있음.
- 교육인적자원부가 ‘상대평가 내신등급제’ 도입을 발표하자 그 동안 입시경쟁으로 자살을 선택한 학생들을 위로하는 추모 촛불집회가 열림.
- 이 추모 촛불집회는 우발적으로 시작된 것이었으나 계속 확산되었고,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이 본격적인 청소년인권운동단체로 발전함.

○ 2008년 촛불시위를 촉발시킨 청소년 참여운동

- 청소년 참여운동은 계속 확대되어 그 분야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됨. 이는 청소년 기본권 운동이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왔음을 증명함.
-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중단 촛불시위는 청소년들이 학교급식 먹거리문제를 토론하다 촛불시위로 발전한 것으로서, 시작한 먹거리로 촉발되었으나 2000년대 청소년 의제를 축적하여 먹거리 이외에 성문제, 두발, 입시경쟁, 투표권 문제 등을 집약하여 주장함.

3

해외, 청소년 참여민주주의의 사례

○프랑스의 68혁명에서의 청소년

- 1968년 5월 21일 학교 체계의 민주화와 학생 자치에 대한 요구로 발생한 청소년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됨.
- 자유, 평등, 자치를 내세운 1천만명의 학생,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하였으나 드골 대통령의 강경한 자세로 실패함.
- 그러나 프랑스 정권은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 고등교육 기관의 민주화 등의 성과를 가져옴.

○독일의 청소년 참여운동

- 독일 기본법 7조에 따르면 “누구나 개인적으로 또는 공동체에서 고충에 대한 불만이나 부당함, 청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 독일에서의 청소년 사회참여는 인권단체, 환경단체, 평화단체, 정치단체 등 독일사회 전 영역을 가로질러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연방적, 지역적 차원에서 실제로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장려되고 있음.
- 독일 ‘아동·청소년을 위한 청원위원회’는 국적에 관계없이 독일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청소년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각 지역구에 설치된 지부를 통해 아동·청소년들은 학교문제, 지역문제, 환경문제, 청소년 인권문제 등을 개별적, 단체적으로 청원할 수 있음. 그리고 청원위원회에 고발되거나 접수된 문제들은 녹색당과 연립90을 통해 주제별로 수렴되어 제기된 문제의 중요성, 시급성에 따라 각 지역차원, 주차원적, 연방차원 순으로 다루어지게 됨.

4

청소년 참여를 기대하며

○ 청소년 참여의 확대는 시대적 흐름

- 청소년 문제에 있어서도 '당사자 운동'이 확대되고 있음 즉 참여민주주의의 주체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시대적 흐름.
- 청소년의 자발적 사회 참여는 청소년에 대한 보다 올바른 이해 위에서 청소년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만듦에 따라 정부 혹은 개별 학교의 정책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음.
- 또한 청소년의 자발적 사회참여가 청소년의 자기책임의식과 자발성을 크게 높일 것이라 기대됨.
- 자발적 참여 이외에도 국가차원에서 청소년의 다양한 사회참여 방안을 보장할 필요성이 대두됨.
- 청소년의 요구가 무엇인지, 어떻게 함께 개선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청소년 참여는 더욱 성장해나갈 것임.
- 이러한 인식 위에서 청소년과 어른들이 함께 노력할 때 우리 나라의 청소년 참여는 더욱 성숙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청소년의 미래를 밝게 할 수 있음.

○ 정부차원에서의 청소년 참여 정책 방안

<표 - 청소년이 제안하는 청소년 정책>

활동 · 체험 · 여가 관련	청소년활동 및 여가	제안1. 단위학교의 토요일활동프로그램 운영 제도화
		제안2. 학교와 특색 있는 수련관과 연계하여 청소년활동 실시
		제안3. 청소년 문화카드(놀이시설 및 문화시설 할인)발급
	창의적 체험활동	제안4. 창의적 체험활동 인정범위 확대
		제안5. 창의적 체험활동 인증 간소화
	자원봉사 및 국제교류프로그램	제안6. 학교 및 청소년단체에서의 적극적인 정보 제공
		제안7. 봉사 및 국제교류프로그램 참여자 선발방식의 변화
		제안8. 활동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 참여기구	제안9. 청소년수련시설 홍보강화 및 접근성 강화
		제안10. 청소년수련시설의 놀이기능 확대
		제안11.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능 정상화
		제안12.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홍보 강화
		제안13. 청소년운영위원회 간 교류 활성화
		제안14. 청소년운영위원회 실질적 참여 여건 개선
진로 · 아르바이트 · 학교폭력 관련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제안15. 진로교사 증원
		제안16.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진로지도교육 실시
		제안17. 방학기간동안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인턴십 기회 마련
		제안18.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후기 청소년을 위한 진로체험 기회 확대
	아르바이트	제안19. 중·고등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제안20. 청소년 근로에 대한 정보제공(법 관련) 및 관리 사이트 개설·운영
		제안21. 건전아르바이트 업소 스티커 붙여주기 캠페인 및 모범업소 선정 등 실시
	학교폭력	제안22. 학교폭력의 근본적 원인 밝혀, 예방적 차원의 대책 수립
		제안23. 학교폭력신고 포상제 실시
		제안24. 학교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제안25. 가해학생에게 사회적 역할 및 책임 부여 : 학생경찰제 등
		제안26. 학교 내 상담실을 교무실 내 배치해 피해학생의 이용이 쉽도록 함

※ 출처 - “청소년의 목소리 : 청소년이 제안하는 청소년정책”, (여성가족부,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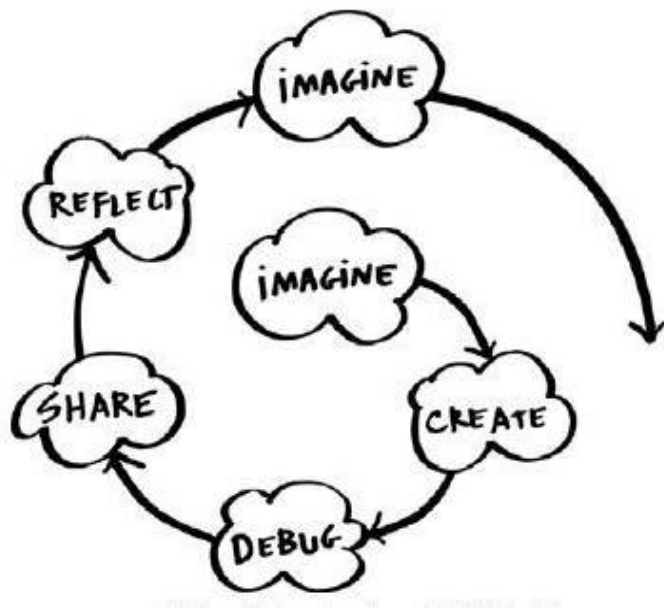
민주통합당 김광진 국회의원
 국방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학교폭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전화번호 02-788-2029, FAX 02-788-0118)
 홈페이지:www.minjuletter.net, 이메일:2030minju@hanmail.net
 트위터:@minjuletter, 페이스북:www.facebook.com/minjuletter

토의 1

.....

주제별 분임토의 I

청소년운영위원으로서의 ‘나’ 그리고 ‘우리들’





토의 2



분임별 토의Ⅱ

청소년운영위원 활동, 활동의 장애물





특강 2



청소년운영위원회 활성화

박 찬 열

(홍은청소년문화의 집 관장)

청소년운영위원회 활성화

박찬열

홍은청소년문화의집 관장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시설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다. 시설의 존재의 이유가 청소년이고 청소년의 대표가 청소년운영위원회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시설은 청소년운영위원회에게 중요한 존재이기도 하다. 그들의 공간이자 힘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이번 워크숍은 이러한 청소년운영위원회에게 중요한 기회이자 자극제일 것이다. 서로의 정보와 경험을 나누고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요한 과정에서 청소년운영위원회 활성화방안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청소년참여활동의 이해

자치참여활동의 의미

청소년자치참여활동은 청소년 자치활동과 청소년 참여활동의 합성어이다. 그러나 형식적 체제에서는 두 용어로 구분할 수는 있지만 의미상에서 살펴보면 자치활동과 참여활동은 나누기 어려운 같은 맥락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즉, 청소년 자치활동이란 용어에는 그 뜻 안에 이미 청소년의 자율적 참여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자율적 참여가 전제되지 않는 자치활동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자치활동의 기본적 속성이 곧 자율적인 참여라는 의미이기도 한다. 따라서 청소년 자치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외부의 간섭이나 압력 없이 구성원 자신의 합의와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청소년활동”을 말한다(김민, 2001).

청소년 참여의 단계

1) 1단계(성인이 이용하는 단계)

청소년사업 혹은 활동이 성인에 의해 주도되고 운영되는 단계. 청소년은 프로그램이나, 활동 및 행사의 이슈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며 성인은 청소년을 이용하지만 그들을 이해관계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2) 2단계(장식처럼 동원되는 단계)

사업이나 활동이 성인에 의해 주도되고 운영되는 단계. 청소년은 행사나 활동에 대해 제한적으로 이해하며 조직화 과정에서 참여도 없다.

3) 3단계(명목상으로 참여하는 단계)

역시 성인에 의해 주도되고 운영되는 단계. 청소년은 사업과 활동에 대해 자문을 제공 할 수는 있으나 의제형성, 피드백 등에 대한 기회 제공은 없다. 성인은 청소년을 이해관계자로 여기는 척 할 수 있다.

4) 4단계(성인이 주도하지만 정보는 제공받는 단계)

참여가 시작되는 단계. 사업은 성인이 주도하고 운영하지만 청소년이 그 의도를 이해하며 누가 왜 어떠한 결정을 내린 것인지 알고 사업을 이해한 후에는 사업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하며 사업에 참여한다.

5) 5단계(성인이 정보를 제공하고 협의함으로써 청소년이 자문과 정보를 공유)

성인이 사업을 고안하고 운영하지만 청소년의 의견이 진지하게 다루어지며 청소년은 과정을 이해하고 자문을 제공한다.

6) 6단계(성인이 주도하며 청소년과 함께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단계)

진정한 참여가 시작되는 단계. 성인이 사업을 주도하지만 청소년과 의사결정을 동등하게 공유한다. 이 단계에서 청소년은 사업의 핵심 관계자로 간주된다. 이때 성인이 청소년 참여에 대한 유능성이나 확신을 갖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어렵게 된다.

7) 7단계(청소년이 주도하고 감독하는 단계)

청소년이 성인의 참여 없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운영하는 단계. 성인은 관찰자로서 존재하며 청소년들의 활동에 대해 인식을 하지만 통제는 하지 않는 단계이다.

8) 8단계(청소년이 주도하며 성인과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단계)

청소년이 사업을 주도·관리하고 성인과 의사결정을 공유하며 관련기술에 대해 성인을 멘토(Mentor)와 코치로 활용한다.

단계	내용	참여수준
8	청소년주도로 성인과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단계	참여단계
7	청소년이 주도하고 감독하는 단계	
6	성인주도로 청소년과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단계	
5	성인이 정보를 제공하고 협의하는 단계	
4	성인이 지시하지만 정보는 제공받는 단계	
3	명목상으로 참여하는 단계	비참여단계
2	장식처럼 동원되는 단계	
1	성인이 이용하는 단계	

청소년참여의사다리(Hart.:1997)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청소년 참여의 사다리에서 높은 단계일수록 가장 좋은 참여의 단계라 볼 수는 없다는 점이다. Hart(1997)는 청소년의 참여가 항상 가장 높은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청소년 참여를 촉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높은 8단계를 언제나 지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청소년의 능력에 맞는 최상의 단계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참여에 관한 청소년의 능력은 청소년참여에 대한 문화적인 태도, 나이, 개별 청소년의 자질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정체성 찾기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가장 큰 고비는 정체성을 찾는 과정에서 다가온다. 필자가 만나 본 상당수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조직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곳에서 그 현상은 더욱 심하다. 정체성에 대한 혼돈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그중 하나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참여의 과정에 있다. 자발적인 참여가 아닌 다른 동기에 의한 인위적인 가입이나 부모님의 권유 등이 그러한 예이다. 청소년동아리 대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청소년운영위원회도 상당히 많은 편인데 이 역시 초기의 혼란이 많은 편이다. 청소년동아리의 성격상 각자의 지향성과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일치된 목소리를 만들기 어려운 면이 있다. 또 다른 원인은 의지는 있으나 방법과 방향성에 대한 혼란에 의한 것이다. 모두가 청소년참여를 통해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방법 및 방향성에 대해 혼미한 상태이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이다. 잘못된 열심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보다 더 해로울 수 있다. 때문에 우리는 배움이 필요하고 타기관의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어떠한 방식으로 일을 추진하는지 궁금해 하고 직접 그들을 만나고 싶어 한다. 금번의 워크숍은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좋은 기회라고 생각된다. 서로의 생각과 고민들을 이번 워크숍을 통해 많이 교류하고 나누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아가길 바란다.

목소리를 모으기

청소년운영위원회에게 청소년의 욕구를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비중 있고 중요한 일이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활동진흥법¹⁾에 근거한 공식적인 창구이기도 하고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타인의 의견을 듣는 것은 일견 쉬울 수 있으나 듣는다는 행위가 수동적인 것이 아닌 능동적인 것이라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또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단편적인 개인의 요구를 전체의 것으로 일반화하거나 자의적으로 예단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기에 가급적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 청소년을 위한 목소리는 청소년에게만 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사회적 관계 속에 있고 사회적 관계는 청소년 이외에도, 부모, 노인, 아동 등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의 사람들이 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 속에서 다양한 세대와의 소통과 이해의 노력은 앞으로 더욱 요

1)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 (청소년운영위원회)

①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되어질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야 하고 이러한 내용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우리는 진일보할 수 있다. 목소리를 듣는 방법은 다양하다. 면접을 하기도 하고, 설문지를 만들어 배포할 수도 있으며 sns 활용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그렇게 수렴되어진 자료는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청소년시설들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직시하며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결정하기

우리는 앞으로 활동을 하면서 무엇인가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결정의 내용은 사소한 것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이번 청소년운영위원회 워크숍에 누가 갈 것인지도 어떠한 결정에 의한 것이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가야 된다는 의견부터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들 중에 추첨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듯 무엇인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을 위한 체계적이고 안정된 방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상당수의 청소년운영위원회는 회의진행법, 의사소통법을 배우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일에 서툴다. 개인의 역량에 기인하기도 하겠지만 사회적인 영향도 적지 않다. 성장의 과정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에 자유로운 분위기가 많지 않고 결정되어진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도 하다. 심리학자인 Marcia는 부모나 멘토 등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대상에 의한 결정을 자신의 것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자아정체감 유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과 환경의 영향을 뛰어넘어야 한다. 청소년참여는 결정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을 함께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표현하기

우리는 결정된 바를 효과적이고 시의적절하게 표현하거나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떠한 의사나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 이는 상당한 노력과 배움,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다. 표현능력이 떨어질 경우 우리는 전달하려는 내용의 본질보다 표현방식과 태도로 인해 소모적인 다툼을 벌이게 될 수도 있다. 반면에 우리의 목소리와 합의된 바를 표현하는 것은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다른 청소년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도 있고,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다. 많은 이들이 우리의 표현으로 청소년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갖게 되기도 한다. 실제로 많은 청소년참여활동에서 캠페인이나 다양한 주제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얻은 결과물을 지자체나 관련기관에 제시하기도 하고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해 발표하기도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러한 기관들이 청소년들의 의견을 듣는 것에 대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예전에 비해 상당히 유연한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행동하기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회의테이블에서 나오지 않는다. 진정한 힘은 결정한 것을 실행하는 데서 발생한다. 우리는 옳다고 믿는 것들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실천해야 한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행동함으로써 우리는 힘을 얻게 된다. 더 중요한 일은 함께 행

동하는 일이다. 우리는 다양한 자원들과 연대하고 협력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또한 멈춰있는 사람들이 같이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자극하고 지원해줘야 한다. 중동의 민주화운동, 일명 자스민 혁명은 행동을 통해 얻어진 것이다. 행동하는 것은 폭동이나 시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전 세계적 과제인 지구온난화방지는 승강기 대신 걸어서 계단을 이용하는 작은 행동으로부터 시작된다. 얼마 전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을 거부하고 광화문에서 일인시위를 하며 대안학교를 설립한 청소년을 만났다. 모두가 그 청소년과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판단한 일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어렵지만 존중받을 만한 일이다.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하여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은 매우 긴 호흡이 필요하다.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행동하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으나 그 과정과 시간이 고단한 싸움이다. 그 과정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마음을 다치기도 하고 절망을 맛보기도 한다. 그래도 지금 우리가 이러한 위크숍을 하고 같이 모여 고민을 하는 것은 이전의 힘겨운 노력의 결과물이자 우리에게 주는 선배들의 선물이다. 이에 지속가능한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의 구체적 생활의 1차적 거점이며 청소년들의 생활, 가정, 교육과 연관된 일상의 장인 동시에 현대사회의 역기능과 개인의 문제를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영역이며, 공동체적 운동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장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²⁾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러한 움직임은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청소년운영위원회는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참여해야 한다.

실례로 지역사회변화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미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킨 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다. 청소년들을 피동적인 존재가 아닌 능동적 대상으로 인식하고 그들이 지역의 주요한 구성원으로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또한 그러한 지역사회를 통해 성장하게 되는 선순환구조를 갖도록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청소년시설들은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청소년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같이 나눠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한 조직이나 지역사회가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며 삶의 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사회로 발전시키는 데에 그 구성원들의 자질이나 역할은 절대적 요소임에 두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그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한 짊어져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지해야 한다.

2) 김정주 외,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 문화관광부, 2002, p 157~158

집단과 자신이 함께 성장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청소년운영위원회활동은 기본적으로 이타적인 활동이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도움을 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청소년운영위원회활동을 통해 참여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되고 타인과의 상호 협력과 대화의 기술 등을 얻는 등 건강한 가치와 생활기술을 습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현재와 미래의 자기 삶을 지향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어느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얻을 수 있다. 청소년운영위원회활동은 구성원 개인의 책임을 강조 하고 때로는 희생을 요구하기도 한다. 자신의 삶의 무게에 청소년운영위원회가 그 무게를 더할 수 도 있다. 우리는 소진되어서는 안 된다. 그 과정에서 더해지는 무게보다 더 큰 힘을 부여받고 성장해야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는 개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의 옆에서 동료들이 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야하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부디 자신의 성장과 사회의 성장이 함께 이루어지는 활동이 되기를 소망한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아젠다를 발굴해야한다.

청소년운영위원회활동은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큰 그림으로서의 아젠다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들과 끊임없이 교류하고 소통해야 할 것이다.

아젠다를 선정할 때 주의할 점은 특정분야에 대해 관심이 증대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떠한 이슈에 의한 관심은 시간이 지나면 곧바로 소멸된다. 단기적인 측면에서의 이슈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아젠다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일부의 사람들이나 계층에 의해서 생기는 것 역시 경계해야 할 것이다. 가족, 학교, 청소년시설이나 단체 외에도, 정치인, 행정가, 민간기업 등 다양한 계층과 부류에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네트워크를 통해 더 큰 세상을 바라보자

복잡다단한 사회에서 하나의 조직이나 기관이 다양한 일들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때문에 청소년운영위원회에게 있어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일은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는 일이다. 네트워크란 단순히 서로 다른 두 기관이 만나서 새로운 일을 벌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네트워크란 그 이상의 깊은 의미가 내재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네트워크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그 필요성에 대하여 절감한 상태에서 네트워크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회용품처럼 필요가 끝나면 사라지는 단순한 연결고리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많은 네트워크의 고리들이 쉽게 풀려버리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전이해에 대한 부족 때문이다. 네트워크를 위한 네트워크라면 그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다.

네트워크는 나 혹은 상대방이 아닌 우리의 개념, 즉 공동체성이 필요하다. 그러한 공동체성이 확보되기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바로 네트워크의 대상인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다. 또한 공동의 관심영역을 찾아가야 되며 감춰진 새로운 영역을 같이 발굴해 나가야 한다.

청소년 운영 위원회 발전 단계

구분	특성	주요사업
초기 단계	-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고민 - 회의의 운영 및 조직의 관리필요 - 청소년 제반사항에 대한 이해 부족	- 청소년참여관련 교육실시 - 타기관방문 및 벤치마킹 - 회의진행법 교육 및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이해교육 - 청소년시설 및 정책에 대한 교육 및 자료조사 등
안정화 단계	- 청소년운영위원회의 활동인원 및 조직이 안정화되는 단계 - 청소년시설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이루어지고 청소년정책에 대한 접근시도 - 자체적인 사업기획을 추진할 수 있는 단계	- 청소년욕구 및 만족도 조사 등 실시 - 청소년관련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등 - 청소년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시설의 사업기획 단계에 참여
확장 단계	- 청소년시설을 벗어나 청소년정책 및 법에 관한 부분까지 관심이 확장 - 다양한 활동 및 사업추진을 기반으로 자체기획 및 연대와 협력을 통한 청소년참여가 가능한 상태 - 청소년에서 사회적문제로 관심이 확대되고 실행이 가능한 단계	- 지역사회에서 청소년관련 아젠다를 발굴하고 제시 - 선거 등 주요 이슈상황에서 청소년의 의견개진 및 성명서 발표

마치며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사업 및 정책적 접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평가를 받는 부분이 청소년참여이다. 이러한 청소년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위원회가 조직되었고, 청소년시설에도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조직되는 등 청소년들의 실질적 권리를 신장시키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되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배고프다.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고 넘어야 할 산이 첩첩이다. 때로는 그 길을 걷는 과정의 안팎에서 많은 어려움이 다가올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이 누군가의 땀과 눈물을 양분삼아 마련된 것처럼 우리의 과정은 그 누군가의 디딤돌이 될 것임을 기억하자.

청소년의 참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자 책임이다.

“나 혼자 꿈을 꾸다면 한갓 꿈에 불과하지만 우리 모두가 꿈을 꾸면 그것은 새로운 현실의 시작이다.” (훈데르트 바서)

토의 3



관장님과 함께 만드는 운영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제안하는 ‘청·운·위 활동’





특강 3



미래사회와 청소년

배규한
(국민대학교 교수)



미래사회와 청소년

(2012 청소년운영위원회 대표자 워크숍 특강)

배 규 한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자문위원장

목 차

1. 미래란 무엇인가?
2. 미래는 다가오는가?
3. 왜 청소년이 중요한가?
4. 청소년의 아픔과 희망
5. 내 인생의 질문
6. 행복한 사람의 비밀



1. 미래란 무엇인가?

1. 미래란 무엇인가?

가. 미래의 의미

- 시간의 차원



- 상태의 개념 : 시간에 상태의 의미 추가



1. 미래란 무엇인가?

나. 어느 시간이 중요한가?

- **과거**는 확정, 집착하면 어리석은 사람
- **현재**는 찰나, 탐닉하면 하루살이 인생
- **미래**는 불확정, 구상하면 지혜로운 사람



1. 미래란 무엇인가?

다. 미래를 보는 세가지 인식론



숙명론



진화론



창조론



2. 미래는 다가오는가?

가. 사회변동의 주요변수



과학기술



가치관
행동양식

≡ 미래는 '생각의 연장' '상상의 실현'

2. 미래는 다가오는가?

나. 국가적 차원의 미래준비

- 미래설계 :

비전설정

사회적 설득
공감대 형성

전략/정책

- 비전 : 성취 가능한 가장 바람직한 상태의 형상

장기전망

목표설정

전략수립

자원동원

정책추진

(Alternative Futures : 정책적 판단과 공감대 형성의 도구)

2. 미래는 다가오는가?

다. 개인적 차원의 미래준비

- 자신의 관심분야와 강점을 발견하라.

- 성취 가능한 미래 모습을 형상화 하라.

...

- 구체적 목표와 Time Table을 만들어라.

- 시간계획에 따른 목표달성 노력을 지속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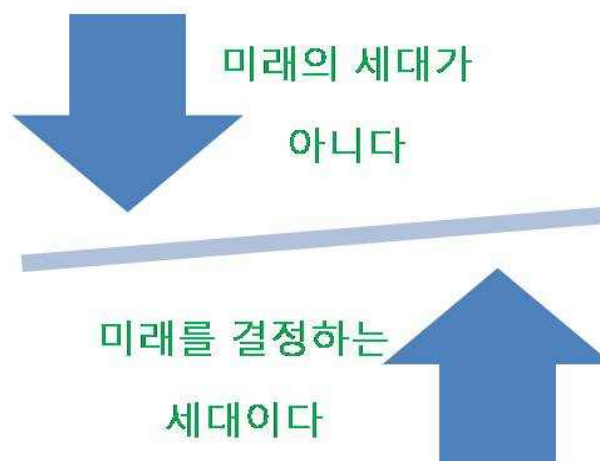




3. 왜 청소년이 중요한가?

3. 왜 청소년이 중요한가?

가. 청소년이 미래를 결정한다.



3. 왜 청소년이 중요한가?

나. 사회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새로운 가치관과 행동양식

무서운 10대와 놀라운 10대

3. 왜 청소년이 중요한가?

다. 바람직한 미래세대의 모습

디지털 시대의 첨병

네트워크 사회의 유능한 정보원

글로벌 시대의 선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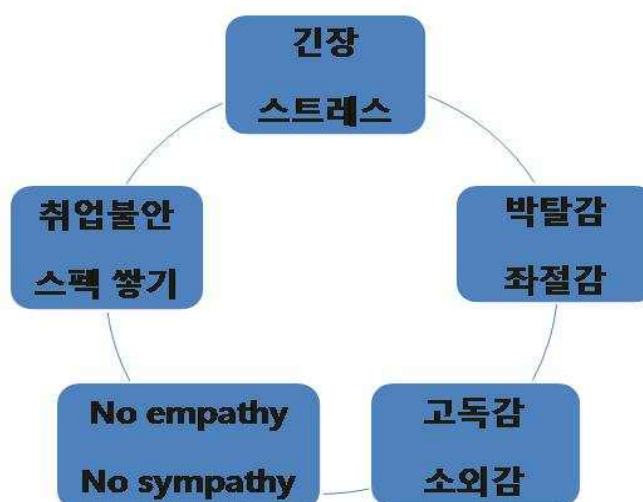
새로운 패러다임의 창조자

생명경외, 절제와 조화

4. 청소년의 아픔과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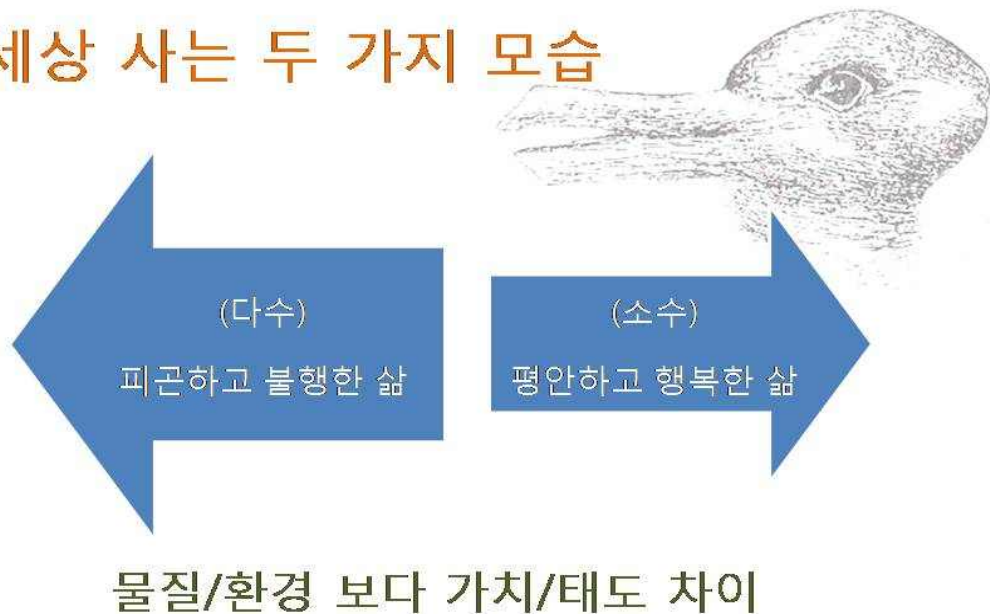
4. 청소년의 아픔과 희망

가. 청소년은 왜 아픈가?



4. 청소년의 아픔과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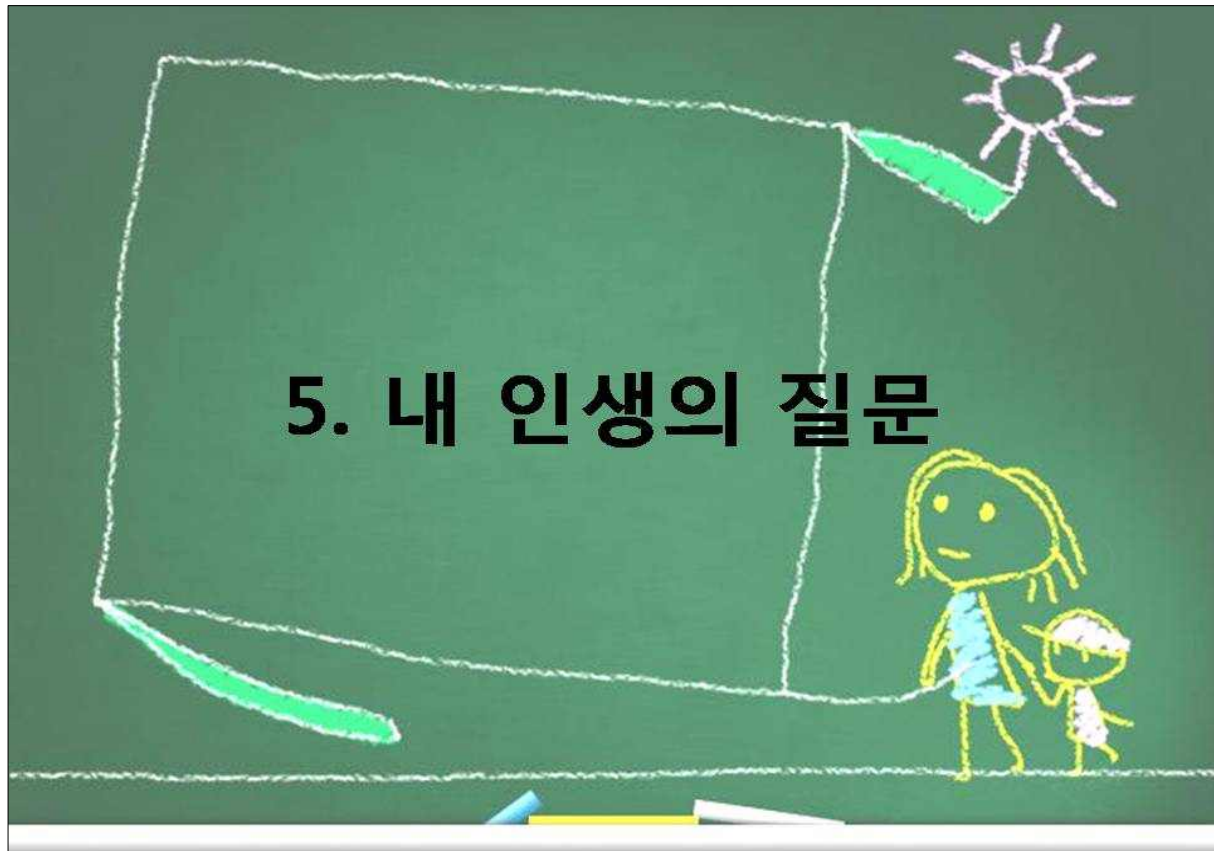
나. 세상 사는 두 가지 모습



4. 청소년의 아픔과 희망

다. 미래세대의 희망 찾기

- 무한한 가능성의 시대 (애벌레 → 나비)
- 새로운 가치관 : 인간중심, 비물질주의
- **정보사회**의 새로운 제도
수평적 인간관계, 경쟁 대신 공생,
자연과의 조화
- **산업사회**의 끝 세대? **정보사회**의 첫 세대?



5. 내 인생의 질문

가. 어떻게 지금 내가 있는가?



부모님 사랑의 결실



생명의 신비
창조론 vs. 진화론

5. 내 인생의 질문

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가?

- 상호작용과 사회적 관계
- 문화와 사회화
- 사회제도와 환경

* 신 앞의 단독자



5. 내 인생의 질문

다. 어떻게 살 것인가?



신비한 생명



다른 삶,
다른 목적



누구나 즐겁고
행복한 삶 소망



6. 행복한 사람의 비밀

6. 행복한 사람의 비밀

가. 무엇이 삶을 힘들게 하나?

물질적 결핍

병 마

수많은 걱정

인간에 대한 실망

6. 행복한 사람의 비밀

나. 성공적 삶이란?

- 하고 싶은 일 한다.
- 마음이 편안하다.
- 항상 기쁘다.
- 인사 받으며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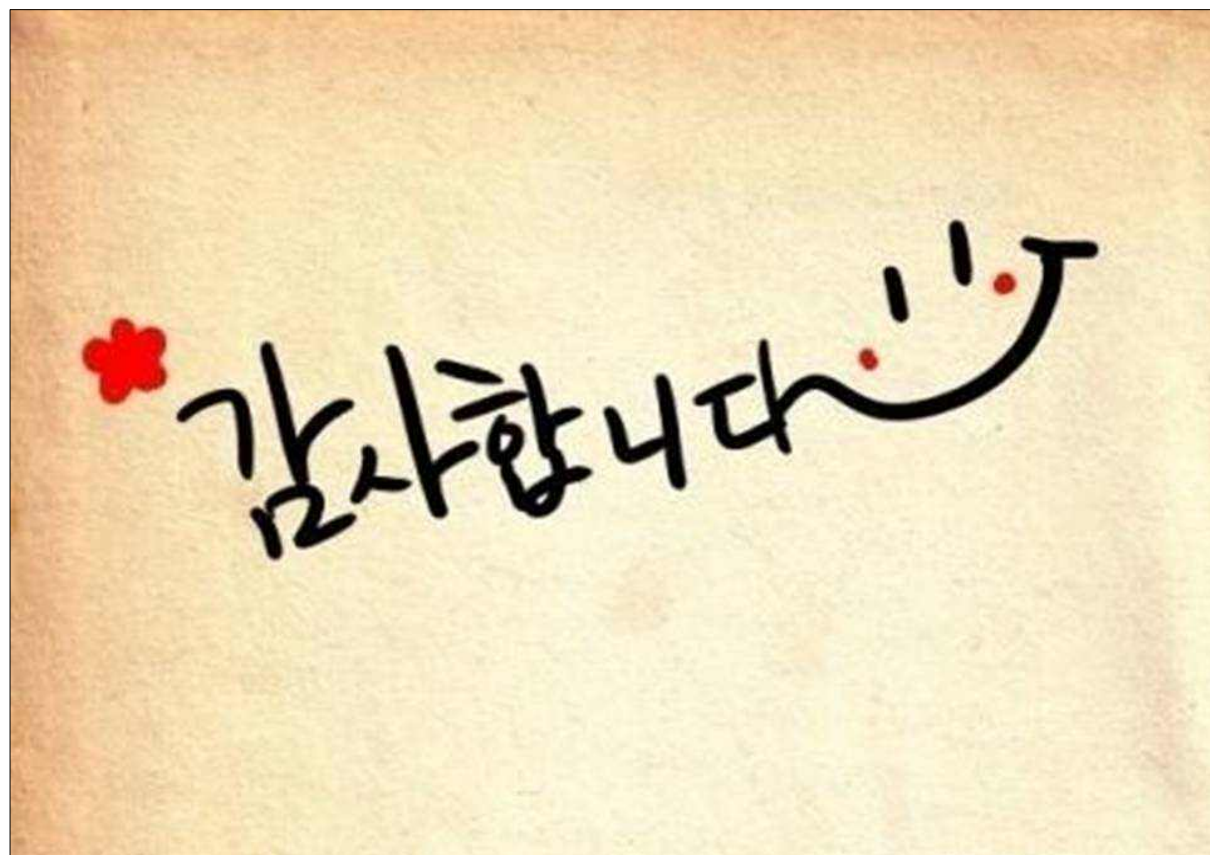


6. 행복한 사람의 비밀

다. 지혜로운 삶

- 경쟁/성취 보다 공생/가치 중시
- 물질적 풍요보다 인간적 보람 추구
- 절제와 조화, 만족
- 현실의 긍정적 수용, 미래의 꿈





.....

부 록

2012년 청소년운영위원회 활성화 계획

청소년활동진흥법(’12. 6. 18)

I 사업개요

□ 목 적

-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등을 청소년들이 직접 자문·평가,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이 시설의 주인이 되고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청소년의 욕구와 의견이 반영되어 운영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3조(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운영위원회는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청소년으로 구성
- 운영주체 :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동 운영
- 설치대상 :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 추진경과
 - 2001년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침에 시설의 청소년참여 증진을 위한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권장
 - * 2000년부터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심의 위원회 검토시,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추진
 - 2003년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법적 근거 마련 후 설치 확대
 - 2006년 이후 수련시설 평가지표(청소년운영위원회 항목신설) 포함

□ 운영현황

- '05년 104개소에서 '12년 305개소로 확대 운영 중
 - － 공공 수련관 및 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중심 선발지원

《 연도별 운영실적 》

설치대상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운영지원(개소)	104	210	250	258	273	286	273	305
지원예산(백만원)	104	210	250	258	273	286	273	305

* 2003년부터 국고편성 예산지원(1개소당 국고 1백만원 지원)

- '12년 생활권(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수련시설 391개소 중 305개소(78%) 운영비 지원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현황 》

(2011.12.월 기준, 단위:개소)

구 분	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계	738	176	215	176	43	121	7
공 공	469	172	210	41	26	13	7
민 간	269	4	5	135	17	108	0

□ 한 계

- 2006년 이후 사업 양적 및 질적 성장 정체
 - － 2000년대 초 다양한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평가, 연수 등)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개소당 1백만원(국고)의 운영비만 지원
- 청소년운영위원회 사업이 청소년참여 증진사업에 통합운영에 따른 활성화 미비
 - － 청소년수련시설 활성화 및 청소년참여에 대한 기본 방향 달성 한계성 내포(청소년활동진흥법상 근거)
- 청소년운영위원회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우수사례 발굴 미비

Ⅱ

2012년 추진 계획

□ 일반개요

- 대상 : 청소년수련시설 305개소
- 지원 : 1개소당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 2백만원 지원
* 예산: 305백만원(청소년육성기금), 국비 1백만원, 지방비 1백만원
- 구성 : 지역내 청소년(9~24세), 시설별 10~20명

《 '12년 시도별 지원 개소 수 》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개소수	305	44	14	9	12	6	10	7	62	32	15	14	16	14	13	15	22

□ 운영내용

- 전국 청소년운영위원회 주요 활동 내용
 -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능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 *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의견조사
 - * 지역사회내의 청소년관련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한 워크숍, 캠페인 개최
 -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평가
 - * 지역내 청소년정책, 청소년사업 및 청소년 시설 등에 대한 자문활동
 - * 시설설비 및 프로그램 운영시 욕구 및 개선에 대한 의견 제시
 - * 청소년시설 운영백서 발간 또는 홍보지 제작시 함께 참여
 - 시설 및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주체적인 책임활동 수행
 - * 전국 청소년운영위원회 워크숍 참여, 타 청소년수련시설 위원들과의 교류(우수 운영위원회 벤치마킹)를 통해 정보공유 및 우수한 활동 발굴
 - * 우수동아리 사례조사를 통해 각 수련시설에 적용 가능한 동아리 발굴
- 청소년 운영위원회 활동 및 구성
 - 정기회의 :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주말에 모임, 운영위원회의 주요활동을 회의를 통해서 결정,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제안 및 건의
 - 임시회의 : 청소년운영위원회 필요시 개최
 - 조직구성 :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기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 구성
 - * 예) 위원장/부위원장/총무/분과장, 실무간사(청소년지도사) 등

□ 추진 계획(안)

-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청소년에 대한 역량강화
 - 전국 청소년운영위원회 **대표자 하계 워크숍 개최**(’8월 예정)
 - ※ 장소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2박3일: 8월 9~11일, 각 시설대표 305명)
 - 청소년운영위원회 지도자에 대한 전문 지도능력 배양(’12년내)
 - 청소년운영위원회 **지도자** 및 참여**청소년 소통·정보공유**의 장 마련
 - ※ 한수협 홈페이지내 마련(우수운영사례, 불만해소 신문고, 선배컨설팅 등)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전문지도자 연수 과정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연수팀과 연수과정개설(’12년 말 ~ ’13년 초)
 - 청소년운영위원회 체계적 관리 및 운영지원
 - 전국 **우수 청소년운영위원회 발굴** 및 홍보(’12년 말 10개소 내외 선정)
 - ※ 인센티브로 여성가족부 장관상 및 상품 등
- 《중장기 추진 사항》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위원회 참여 청소년 체계적 기록관리 및 기록발급 서비스 지원● ‘청소년운영위원회의 날’ 지정운영(선후배 만남의 장 마련)<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관련 우수 및 보급 사례 발굴 및 공유 |
|--|
-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참여 청소년에 대한 효과·필요성 연구 및 중장기 체계화 연구 추진(중장기)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운영위원회 관련 활성화 연구추진 협의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 ①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단체(이하 “수련시설운영단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 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3조(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 ①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운영위원회는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청소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⑥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⑦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사업개요

- 목적 :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등을 청소년들이 직접 자문·평가토록 함으로써 청소년이 시설의 주인이 되고, 청소년의 욕구와 의견이 반영되어 운영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 대상 :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 * '11년 16개 시·도 청소년수련시설에서 303개 위원회 설치·운영

□ 구성 및 선발

- 구성 : 10 ~ 20명 (9세~24세 청소년, 10인 이상 20인 이내 청소년구성)
- 모집 및 선발
 - 방향 : 1) 공개모집과 추천을 함께 하여 기회 균등과 자발적 참여 보장, 2)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으로 선발·구성하여 대표성 확보, 3) 지역여건에 맞는 인원 구성으로 운영의 내실화 도모
 - 선발 : 공개모집 및 추천(공개모집 50%, 추천 50%: 학생회, 동아리, 기타 단체에서 청소년 활동에 관심 있는 청소년 등)
 - 시기 : 1~2월 까지 모집
 - 절차 : 모집방법 및 선발기준 마련 → 모집공고 및 추천의뢰 → 선발(심사) 위원회 구성 → 선발(서류평가 및 면접)

□ 운영계획

- 기본계획 : 청소년수련시설장, 담당 지도사 및 기존 위원들은 향후 청소년운영위원회 인원, 구성, 선발일정, 활동계획 등에 대한 연간 기본계획을 수립
- 회의개최 : 정기회의(월1회이상, 정기적으로 주말에 모임, 운영위원회의 주요활동을 회의를 통해서 결정,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임시회의(필요시)
- 조직구성 :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기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 구성
 - * 예) 위원장 / 부위원장 / 총무 / 분과장, 실무간사(청소년지도사)

- 위촉·해촉 : 1) 위촉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이 하며, 시설장 명의의 위촉장 교부, 2)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 3)활동이 불성실하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 위원으로서 부적격자로 판단될 때에는 해촉 가능

《 해 촉 기 준 (안) 》

- ①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촉할 수 있다.
-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자
 -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50% 미만인 자
 - 범죄, 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성과 출석위원 2/4이상의 동의로 해촉을 의결한 자
 - 위원 본인이 탈퇴 의사를 전달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 ※ 특별한 사유 : 천재지변, 학교시험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시험, 본인 질병과 사고,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상 및 결혼

□ 활동내용

-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능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 *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운영위원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의견조사
 - * 이용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의견수렴 활동
-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평가
 - * 지역사회내 청소년정책, 청소년 시설 등에 대한 자문활동
 - * 시설설비 및 프로그램 운영시 욕구 및 개선에 대한 의견 제시
 - * 청소년시설 운영백서 발간 또는 홍보지 제작시 함께 참여
- 시설 및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주체적인 책임활동 수행
 - * 우수 청소년수련시설 벤치마킹 활동
 - * 전국 청소년운영위원회 워크숍 참여, 타 청소년수련시설 위원들과의 교류를 통해 정보공유 및 우수한 활동 발굴

□ 연간활동계획

- 1 ~ 2월 :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 모집 및 선발
- 3 ~ 4월 :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촉식, 워크숍
- 4~12월 :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자문·평가 및 모니터링활동, 주체적인 책임활동
- 1월 : 청소년운영위원회 보고서 발간, 홍보계획 수립

□ 운영사전 기반조성

-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수련시설 운영관련조례, 정관, 내부규정 등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함
-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예산을 확보 중요
- 담당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역할을 운영위원 개인의 능력과 의사 등을 고려하여 부여

□ 활동지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청소년이 청소년수련시설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 : 청소년참여포털(www.withyouth.go.kr)운영, 청소년참여 지역사회변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참여활동 우수자에 대한 장관표창 수여, 청소년참여활동 예산지원, 국제교류 활동기회부여
- 지방자치단체 : 자치단체장과의 만남, 우수자에 대한 자치단체장 표창 수여, 청소년참여위원회 추천, 국제교류 활동기회부여, 청소년참여활동 예산지원
- 청소년수련시설 : 수련시설장 명의의 위촉장 수여, 참여활동 우수자에 대한 단체장 표창 수여 및 상부기관 추천, 활동증명서 및 봉사활동 증명서 발급, 프로그램 및 시설무료이용

- 2003년 : 2003년부터 16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생활권 공공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비를 지원하고, 운영위원회 평가와 운영 컨설팅활동을 통해 우수청소년운영위원회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 2004년 : 운영위원회는 민주적 방법과 절차에 의해 선출·임명된 시설 및 지역사회의 대표로 구성되며,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해 청소년지도사를 간사로 배치하여 운영
 - ※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방향, 사업계획의 심의·평가 등을 통해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전반에 참여 및 지역사회 청소년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참여(‘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침’ 작성 및 하달)
- 2005년 : 104개 청소년수련시설에 200만원씩의 운영비를 지원 및 중앙청소년운영위원회 평가단(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내 10명 구성)을 구성하여 사업평가 실시
 - ※ 운영위원회 포럼개최(2005.8.27~28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80명참석), 청소년운영위원회 우수 운영사례집 발간, 청소년운영위원회 지도자 포럼개최
 - ※ 평가결과 : 우수운영위원회 선정(2개소: 경기 군포 당동청소년문화의집, 서울 신월청소년문화의집), 인센티브로 일본 해외연수 지원(5박6일)
- 2006년 이후 단순 운영예산지원 사업의 형태로 현재까지 유지, 청소년참여 사업의 하나로 포함되어 관리되어 옴
 - ※ 청소년수련시설 활성화와 관련된 지원 및 교육 등에 있어서는 정체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한도희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전문위원



우리나라는 특수한 역사적·사회문화적 배경으로 인하여 기본적 인권이나 권리수준이 매우 미약했으며, 특히 청소년들의 인권은 삶의 주체자가 아닌 미성숙한 관리지원과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낮은 사회적 인식으로 더욱 열악한 위치에 놓여있다. 청소년들은 어려서부터 자신의 권리를 알고 찾는 것이 습득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자기의 권리를 남이 찾아주는 예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우리사회에서는 청소년의 인권이 무시되었고, 청소년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청소년인권에 관심을 갖는 성인들과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견고히 자리잡고 진정한 의미의 시민사회로 성숙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어려서부터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권리를 존중받고 누리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더불어 남의 권리도 존중하는 습관과 태도의 형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신에 관한 일에 있어서 의견이 존중되고 자신의 일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나가는 경험과 토양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인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선언적 성격의 기본권으로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 문제는 인권이 선언적 법적인 영역에서만 해석된다면 다양성의 상징으로서 청소년들의 참모습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청소년들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수많은 관계형성을 통하여 살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들 속에서 다양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

90년대 후반 이후 청소년분야에서는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1998-2002)을 계기로 ‘청소년 인권신장과 자율·참여’를 주요 정책이념으로 하는 획기적 정책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 내었으며, 이러한 노력은 2003년도의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2003-2007) 수립으로 이어졌고, 2005년 ‘청소년 참여·인권 증진’ 정책이 청소년위원회의 4대 핵심추진과제로 주목받기에 이르렀다. 청소년관련법은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것과 의견표명권, 자치권, 참여권 등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를 천명하고 있으며, 인권교육 실시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함으로써 국제적 수준의 청소년 권리 신장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청소년 인권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확대되고 있으나, 청소년인권 관련 종합적·체계적 현황분석과 이에 기반한 중장기 계획이 부재하여, 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가로서, 정부는 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가지며, 2008년 이에 대한 정부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국제적 수준의 청소년인권 신장 노력을 위해서도 청소년 인권현황 진단과 인권신장을 위한 중장기적 비전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것과 의견표명권, 자치권, 참여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권교육의 실시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함으로써 국제적 수준의 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다.

면밀히 본다면 청소년을 ‘미래의 주역’이 아닌 ‘오늘의 사회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청소년들의 삶과 사회의 주체이자 자율적 권리향유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커다란 정책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은 아직은 시작단계로서 앞으로 많은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이 개발되고 시행되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청소년인권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립 매김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 자한다. 우선적으로 청소년인권의 개념과 역사적 흐름을 진단하고, 우리나라 청소년참여에 대한 현 실태를 점검하여 보고, 마지막으로 향후 지역사회차원의 청소년참여 및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여 본다.

1. 청소년 인권의 역사적 흐름과 발전

청소년 인권의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두 가지의 흐름으로 바라볼 수 있다. 한 가지는 세계인권선언 같은 식의 선언과 규약적 논의를 하나를 들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청소년들에 대한 논의이다.

1) 국제 선언과 규약에 비춰본 청소년 권리의 진행

1차 세계 대전을 통해 드러난 아동들의 피해는, 1924년의 제네바 선언을 통하여 국제 사회가 ‘아동 권리’를 하나의 주제로 인식했음을 최초로 보여주었다.

이후 2차 세계대전 통해 인류가 경험한 참상 속에서 아동이나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입은 피해가 컸던 배경을 가지고 ‘1948년 아동권리 선언’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제네바 선언’과 ‘1948년 아동권리선언’은 선언으로서 밖에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구속력을 가지기 못했다. 또한 이들 선언의 밑바닥에 깔린 핵심적인 관점은 ‘제네바 선언’에서 보여지듯이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우선적인 돌봄’을 필요로 한다는 20세기 전 반부의 지배적인 아동관을 반영하고 있다. 즉,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기보다는 여러 면에서 약한 존재이니까 보호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바탕은 10대 원칙인 ‘1959년 아동권리선언’을 만들 수 있게 하였다. 이 선언에서, 아동과 관련된 ‘시민권’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라 볼 수 있는 ‘이름과 국적에 대한 권리’가 추가됨으로써 해서 새로운 전환을 맞게 된 것이다.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를 통해 북부 선진국에서는 아동의 권리를 둘러싸고 발전적이고 빠른 변화를 일어나게 되었다. ‘보호’를 넘어서서 ‘아동의 권리’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고, ‘권리’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1979년 ‘국제 아동의 해’의 선포로 인해 아동 문제에 관한 방대한 양의 정보가 유포되고 출판되기 시작하면서, 아동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문제가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올라 선언을 구속력 있는 조약으로 만들 수 있는 바탕을 만들게 하였다. 이후, 198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게 되었다. 전문과 총 54개 조문으로 구성된 본 협약은 아동의 권리에 관하여 대단히 포괄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 생명권·국적권·신분보존권·의사표시권, 사상 양심 종교 집회 결사의 자유, 사생활의 권리 등 시민적 권리는 물론, 가족동거권, 양육을 받을 권리, 건강 의료에 대한 권리, 사회보장, 교육권, 장애아동의 보호, 문화 활동권 등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를 담고 있으며, 마약, 인신매매, 무력분쟁으로부터의 보호도 규정하고 있다. 통상 기존의 각국 법률이 성인의 시작에서 아동을 단순히 수혜자로만 취급하고 있는데 비하여 본 협약은 아동

을 하나의 인간으로서 인권의 적극적 향유주체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협약은 국제법으로서, 1995년 12월 31일에 조약을 비준한 당사국이 190개국에 이르는 전 세계의 법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청소년을 포함한 아동권리의 측면으로 청소년권리를 접근하는데 한계에 부딪치자, 유엔에서는 청소년권리를 구분하여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유엔은 청소년을 15세에서 24세까지의 연령으로 정의하는데 청소년은 세계 인구의 18%인 12억에 해당하며,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는 87%의 청소년은 자원, 건강관리, 교육, 훈련, 고용과 경제적 기회에 대한 제한적 접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지한다. 이를 위해 유엔 회원국들은 청소년이 개발과 긍정적 사회변화, 기술 혁신 등을 위한 중요한 인적자원임을 인식하고, 청소년들의 이상, 에너지, 그리고 비전은 사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필수적이며, 청소년은 수동적 수혜자가 아니라 변화를 위한 능동적 행위자임을 확정하였다. 더하여 청소년은 헌신적이고 열정적이며 창조적으로 사회의 많은 도전적 이슈들을 해결하며 발전에 공헌해 왔으며, 청소년의 노력은 또래교육과 환경보호를 통해 빈곤 및 기아와 싸우고 에이즈 질병을 막는데 기여해 왔다. 청소년은 또한 다양한 문화와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의 대화, 이해, 그리고 존중을 고무시키는 데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

청소년은 종종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실천하고, 모바일 기기와 온라인 사회관계망 활용 등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혁신적 활용을 촉진하며 통합적 사회발전을 위해 틈새를 연결하는 등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사회(communitiy)와 국가적(national), 지역적(regional), 세계적(global) 발전을 위한 그들의 공헌은 인정되고 격려되어야 한다. 유엔 회원국들은 이를 명심하고, 이러한 도전들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청소년의 잠재력이 어떻게 현재의 사회문화적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요인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를 인식하면서 ‘세계 청소년의 해(1985, 2010)’를 선포하였다.

1985년 유엔은 제1회 ‘세계 청소년의 해(참여, 개발, 평화)’를 기념하였고, 총회는 1995년 이의 10주년 기념으로 청소년의 상황 개선을 위한 국가적 실천과 국제적 지원을 위한 정책 틀과 가이드라인인 세계청소년행동프로그램(World Programme of Action for Youth to the Year 2000 and Beyond:WPAY)¹⁾을 채택하였다. 오늘날 세계청소년행동프로그램은 청소년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분야에서 국가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에서 완전하고 효과적이며 적극적인 청소년 참여가 가능하도록 양적·질적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한 평가에 초점을 둔다. 그리고 2009년 12월, 유엔총회는 2010년 8월 12일부터 2011년 8월 11일까지를 ‘대화와 상호이해(dialogue and mutual understanding)’를 주제로 한 ‘세계 청소년의 해’로 선포하는 결의안 64/134를 채택하여, 제2회 ‘세계 청소년

1) 세계청소년행동프로그램의 15개 우선영역은 교육, 고용, 기아와 빈곤, 건강, 환경, 약물남용, 청소년비행, 여가, 소녀와 젊은여성, 청소년참여, 세계화, 정보통신기술, HIV/AIDS, 갈등예방, 세대간 관계 등이다. 청소년관련 유엔 프로그램은 정부 간 정책형성 지원, 분석적 연구 수행, 그리고 청소년 개발에서 유엔활동의 효과성 증대 등을 포함하여 청소년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의 해²⁾를 개최하였다.

※ 세계 청소년의 날(International Youth Day: IYD)

유엔이 정한 ‘세계 청소년의 날’은 매년 8월 12일이다. 1999년 유엔총회는 결의안 54/120을 통해 제1회 세계청소년장관회의(World Conference of Ministers Responsible for Youth)가 지정한 ‘세계 청소년의 날’을 승인하였다.

1998년 8월 8일부터 12일까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된 세계청소년장관회의에서 다루어진 중요한 주제는 ‘사회의 모든 수준과 영역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청소년참여’에 대한 것이었다. 이 회의에서 청소년은 상상력과 이상과 무한한 에너지와 비전을 지닌 존재로서 사회의 사회·문화·경제·기술적 발전을 지속하는데 핵심적 존재로 규정되었다. 세계청소년장관회의는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의 청소년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해 ‘세계 청소년의 날’을 선포하여 청소년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세계 청소년의 날’에는 세계 각지에서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활동이 펼쳐지는데 유엔은 기념행사 진행을 위한 전략으로 팀 구성하기, 행사 조직하기, 기념하기, 행동하기 등의 과정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의 ‘세계 청소년의 날’ 기념 주제는 다음과 같다. : 제1회 세계 청소년의 날 기념(2000), 건강과 고용(2001), 지속가능한 발전(2002), 청소년 노동(2003), 세대(2004), 세계청소년행동프로그램(2005), 빈곤(2006), 청소년참여(2007), 기후변화(2008), 지속가능성(2009), 대화와 상호이해(2010).

이러한 국제 선언과 규약을 통하여 국제아동의 연령규정의 불명확함으로 아동의 권리와 혼용되어 사용된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진행과정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의 인권은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인권의 관심의 주변문제에서 핵심문제로 서서히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국제아동의 연령은 18세 이하의 모든 대상을 말하며, 국제청소년 연령은 15세에서 24세까지이며, 우리나라 청소년기본법에서의 청소년은 9~24세임)

2)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의 청소년

‘아동기’나 ‘청소년기’를 생애 주기의 한 독자적인 범주로 인식하게 된 것은 근대에 들어서이다. 더불어 청소년의 인권을 말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조금씩 담론화 되다가 최근에 와서는 화두로 제시되기에 이르렀다. 생애 주기를 성인기, 청소년기, 아동기로 나누어 범주화하기 시작한 것은 근대 자본주의화 과정에서이다. 성인의 축소판으로 인지되었던 아이들은 ‘아동’이라는 독자적인 범주로 묶어 내고 미성년인 ‘아동’의 세상과 성인인 ‘성인’의 세상을 분리시키게 된 것은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와 현대 국가의 출현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산업사회의 결과물로서, 산업인력으로 빠져나간 부모들을 대신하여 자녀를 맡아줄 수 있는 장이 요구되었고, 이와 함께 산업화에서 전문 인력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대중교육의 장인 학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자본주의화가 진행되면서 학교에 다

2) 제2회 ‘세계 청소년의 해 행사’ : 제5회 세계 청소년의회(이스탄불, 7.31-8.13), 세계 청소년회의(멕시코, 8.24-27), 제1회 청소년올림픽게임(싱가폴, 8.14-26) 개최됨

나는 기간이 길어졌고 아동기 역시 길어지게 되었다. 사회가 급격하게 분화되고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아동과 어른의 생활권은 점점 더 분리되어 갔고, 이에 따라 ‘미성년’으로 범주화된 10대 아이들은 자기들 또래의 세상을 만들어 갔다.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 있거나, 학교에 다니는 사람은 모두 일방적으로 미성년자로 간주하면서 관리되었는데, 그들의 보호와 통제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된 ‘아동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유 없는 반항으로 잘 알려진 10대의 반란에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10대 들은 부모와 학교 외부에서 많은 정보와 자극을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부모와 학교가 반드시 옳거나 정당한 것만은 아님을 알게 된다. 10대들은 ‘기성세대’의 규제를 부당하다고 느끼면서 자기들만의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갔다. 신세대는 보수적인 기성세대 문화에 등을 돌리면서 보다 진보적인 세계관과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 가고자 했다. 청소년들은 이 시기를 통해 아동과 자신들을 분리시키고, 또 기성세대와 자신을 분리시키면서 독자적인 문화 공간을 마련하게 되고, 성인/아동, 성년/미성년의 경직된 이분법을 깨고 준 시민으로서 입지를 굳히려 하고 있었다. 이러한 서구 청소년들의 움직임은 기성세대와 스스로를 구분하면서 근대성의 새로운 가치를 심어 가는 과정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학교와 가족 밖에서 상당한 발언권, 참정권, 시민권을 확보하려 하였다.

이러한 시도로서 미국, 프랑스, 서독, 일본, 영국 등 소위 선진 국가들은 1960년대에 극심한 학원소요를 맞이하게 되었다. 1964년 미국 UC 버클리대 학생들이 월남전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반대하는 격렬한 반전시위를 벌인 것이 도화선이 되어 반전 학생데모가 미국 전역으로 번져갔을 뿐 아니라 이 같은 학원소요는 유럽 대륙에까지 그 영향을 미쳤다. 인권과 자유, 평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 미국에서도 당시 주방위군을 동원, 학생데모진압에 초 강경책을 사용하여 사상자를 내기도 했다. 그리고 ‘68년 5월 운동’으로 불리고 있는 프랑스의 학생운동은 노동자의 총파업, 좌익사상 주의자들의 득세 등으로 프랑스 전체가 극도로 혼란에 빠졌으며 한때는 프랑스 국가 전체가 울 스톱되는 마비상태에 이르기도 했다. 그리고 이웃 일본은 전후 25년 동안 계속된 좌경화 학생들이 중심이 된 전학련 주축의 학생소요로 사회의 기틀이 흔들릴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시위가 극심한 대학에 대하여는 폐교조치까지 내릴 수 있는 5년 시한의 ‘대학의 운영에 관한 임시 조치법’을 제정하여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1970년을 고비로 학원이 진정되기 시작했다.

이 같은 학생운동의 열풍은 1970년 초부터 잠잠하기 시작하여 오늘날 선진국의 청소년들은 시민적 자유권과 참정권에 있어서 더 이상 화두로 대두시키지 못하게 되었다. 1960년대 서구 청소년들 사이에 불어 닥쳤던 청소년 사회권 확보와 참정권 획득의 사상은 1980년대에 들어서 퇴조현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체제내의 점진적 개혁’을 표방하는 ‘신보수주의’ 물결이 일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의 성인에 대한 자유권적인 운동은 쇠퇴하게 되었고, 대신 갈등적 요소를 문화적으로 풀어가려는 시도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1970년대 히피운동과 반문화 운동을 포함하여 청소년들이 일으킨 하위 문화운동은 사실상 ‘문화 혁명’적 성격을 띠게 된다. 근대사회는 ‘청소년’들에게 일종의 자유로운 유예기를 허용하면서 그들을 통제해 왔는데, 자본주의가 어느 단계에 도달하면 그들의 ‘허용된 이탈’이 도를 넘어서 저항 문화화하게 되었고, 기존의 문화적 해체와 다원화된 새로운 문화적 공간과 범주를

만들어 가게 되었다. 결국 청소년들은 집단적 문화와 정치적 성격을 배제하고, 개인적이고 다원적인 문화를 추구해 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포스트모던의 문화의 기틀을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청소년은 지금까지 자신의 권리를 성인들에게 학생운동과 문화적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해결책으로서 반영되지 못하였다. 청소년 운동의 실패는 결국 청소년 비행, 일탈 등의 문제와 청소년 문화의 형태로 대체되기 시작하였다. 청소년이 사회문제화 되기 시작하자, 기존의 정부와 성인들은 문제의 치유책으로서 청소년의 사회 복지권적 측면에서 대중 학교제도를 축으로 하는 여러 가지 혜택과 수혜 등 대비책을 준비하였으나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청소년에게 있어 창조적이고, 자발적 능력을 가지게 하는 어느 것에도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우선 청소년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데에 있고, 두 번째는 청소년에 관련된 문제 원인 발굴에 있어서 사회 구조적인 측면과 역사의 변화 안에서의 원인을 찾아낸 후 처방책을 제시하여야 했으나, 보이는 현상만의 문제 속에서 문제해결의 처방책을 간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에서 청소년 인권의 흐름을 두 가지 방향에서 살펴보았다. 처음에는 국제적 선언과 협약으로서의 청소년 인권의 확장이었고, 다음에는 청소년 스스로의 문제의식을 통한 성인사회에 대한 반항과 이탈로서의 자기 표현과 권리획득 운동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볼 때, 국제적 선언 및 법적인 근거마련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청소년참여에 대하여 많은 발전을 보여주고 있으나, 문제는 청소년스스로의 참여에 대한 인식과 노력에 있어서는 아직 많은 초기문제를 그대로 남겨둔 채 숙제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현 우리의 주요과제는 청소년의 참여 역량강화(교육과 참여의 실천)를 통해서,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 중에서 현재 가장 큰 실적과 발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청소년운영위원회 관련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2 우리의 청소년참여에 대한 현실 조망 (대한민국)

가. 청소년인권 관련법제 분석

1) 개관

우리나라에는 청소년인권에 관한 독립된 법률은 없으나 국가 최고상위법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서 청소년의 인권에 관해서도 특별조항을 두고 있고, 청소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각종 법률에서는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국제법인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함으로써 이 협약의 규정은 우리나라에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다. 이 절에서는 먼저 이러한 청소년인권 관련 국내법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청소년인권 관련 국내법

(1) 헌법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는 제10조부터 제39조에 걸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중 선거권(24조)과 공무담임권(25조), 연령상의 제한을 받는 근로관련조항(15조, 32조, 33조)과 혼인권(36조 ①)을 제외하고는 청소년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동등한 권리가 보장된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서는 이러한 일반적 규정 외에 청소년과 관련된 인권에 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31조 ①-③)와 연소근로자의 특별보호(32조 ⑤),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실시(34조 ④)에 관한 조항이 그것이다.

교육을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헌법에서는 무상 의무교육과 초등교육의 의무교육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중학교 의무교육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은 초·중학교에서 무상으로 교육받을 권리를 갖는다. 헌법상의 연소근로자 특별보호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제62조부터 제68조에 걸쳐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근로시간의 축소, 취업업종의 제한 등 특별한 보호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헌법상 국가의 청소년 복지정책 의무와 관련하여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아동복지법 등을 통하여 청소년은 복지정책의 수혜자로서의 권리를 갖는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인권교육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2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한 인권교육을 해야 한다. 이러한 인권교육의 일환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있는 청소년은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3) 청소년관련법 등

청소년관계법은 그 법률에서 인권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나 복지,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상 그 자체로 청소년인권에 관한 법률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내용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인권 및 참여 등과 관련된 조항 등을 찾아보고 탐구하는 작업은 매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법률들 가운데 청소년의 인권을 의미 있게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청소년기본법이다. 청소년기본법은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기본이념)는 청소년관련법이 기본적으로 모두 내재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보여주고 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육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방향으로 한다. 1. 청소년의 참여보장 2.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 3.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 4.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향상

제5조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과 최근 추가적으로 보충된 제5조2 “청소년의 자치권확대”는 청소년의 보편적 기본권과 함께 구체적인 참여방안을 보장하고 있다. 참고로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청소년의 자치권확대”조항은 2012년초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면 개정(참여 및 인권조항을 기본권으로 파악하고 청소년기본권으로 조정, 실질적 복지관련 사업 중심의 법조문으로 재구성)과 연동하여 청소년기본법으로 조문전체가 보완 및 이관되었다.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권 조항과, 국제법인 ‘아동권리조약’과 연계된 조항으로 다음과 같다.

①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청소년은 인종·종교·성별·연령·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2012.2.1 신설) ③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하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2012.2.1 신설) ④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청소년은 자신의 능력개발과 건전한 가치관의 확립에 힘쓰고 가정·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는 청소년의 청소년과 관련된 국가정책 및 사업 등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전체 본조신설 2012.2.1)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는 가정의 책임을, 제7조에서는 사회의 책임을, 제8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상의 청소년인권 관련 내용들은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것과 의견표명권, 자치권, 참여권 등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를 천명하고 있으며, 청소년관련 주요시책을 심의·의결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에 청소년대표 참여 등의 성과를 이루어 냈고, 인권교육 실시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함으로써 국제적 수준의 청소년 권리 신장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다.

위와 같이 청소년기본법상에 청소년인권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된 이유는 90년대 후반 이후 청소년 분야에서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1998-2002)을 계기로 ‘청소년 인권신장과 자율·참여’를 주요 정책이념으로 하는 획기적 정책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 내면서, 청소년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의 시민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2003년도의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2003-2007) 수립으로 이어져 2003년 12월 청소년관련법 제·개정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청소년권리에 대한 조항이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 이분화 되는 법체계적인 한계를 보여주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2년 2월에 이르러 청소년인권(권리)에 대한 조항을 청소년기본법으로 통합하였다.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기본권적인 이념과 다양한 책임을 밑바탕에 두고 청소년 활동 진흥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수련활동·문화활동·교류활동의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구체적인 관련조항으로는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이다.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 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기본권적인 이념과 다양한 책임을 밑바탕에 두고 다양한 청소년복지관련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간접적인 관련 조항으로는 제3조(청소년우대)이다.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문화시설·여가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청소년에게 그 시설의 이용료를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보조를 받는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청소년 삶에 대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참여적 시각

1) 우리나라 청소년 바라보기

가)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배경내)’ 표지 내용

아이들은 사람이지만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람답게 사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학교에서
아이들의 권리는 철저하게 유린된다.
아이들은 강제로 머리를 깎이고, 수시로 가방 속을 보여 줘야 한다.
공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모욕을 받아들여야 하고,
어린다는 이유만으로 하고 싶은 말은 금지된다.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없고,
부당한 처벌을 받아도 하소연할 데가 없다.
이렇게 일상적으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지만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은 거의 없다.
공부에 전념하도록 지도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생긴 일들이라고 이해한다.
순종과 겸손의 미덕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반항하는 아이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아는 것도 부족하고 판단력도 부족한 아이들에게
자치와 자율을 허용하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는 것으로 여긴다.
아이들은 사람이 아니라 어린학생이다.
그러니 어른들 말 잘 듣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것이 어른들의 상식이다. 아이들은 어린 상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아이들은 인권침해가 구조적으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라는 공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폭력과 인권침해 속에서 아이들은 어떻게 자신을 가꾸어가고 있을까?
폭력과 인권침해 속에서 아이들은 어떻게 자신을 가꾸어 가고 있을까?
인권의 존엄성을 타인에 대한 배려를, 토론과 대화의 힘을,
자율과 자치의 가치를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성장하고 있을까?
대부분의 아이들은 일상적인 인권침해에 분노하지만,
그 분노는 곧 순응과 체념으로 바뀐다.
저항을 해 보지만 그것이 학교나 교사를 조금도 바꾸어 낼 수 없다는 것을
곧 알게 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교사들의 가학적 폭력과 허위적인 권위를 싫어하면서도 그것을 배운다.
자율과 자치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대화나 토론을 할 능력이 없다.
학교를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재조직하지 않는 한 아이들도,
학교도, 우리 사회도 모두 망가질 수밖에 없다.
하루속히 그들에게 사람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돌려주어야 한다.
그들은 학생이 아니라 사람이다.

나) ‘왜 우린 안 주는데?’(중등 우리교육 2002년, 청소년 성장을 금지당한 아이들 중에서)

따져묻기 1 : 투표권. ‘미성숙한 인간’에게는 금지된 기득권의 산물

청소년의 위에는 ‘19세 이상’의 어른이 있고, 그들은 철저한 그들만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간다. 그 특권중 하나가 바로 ‘투표권’이다. 요즘 청소년들 정말 무섭다.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말이다. 중3만 돼도 앉아서 하는 얘기가 정치 농담이다. 이회창이 어떻고 이인제가 어떻고 노무현이 어떻고....

오히려 청소년들이 어른들보다 바른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떤 청소년들은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나 진보정당의 후원회원으로 활동하기도 한다.(나는 민주노동당 후원회원이다.)

나는 투표권을 17세부터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변화에 따른 청소년들의 성숙과 지금 청소년들의 정치사회적 관심을 보면 이미 우리들은 투표할 수 있는 사고력과 판단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 청소년들은 어디 자신들의 의견을 말할 기회도 자격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여성도 동성애자도 나이가 차면 투표권을 지니고 자신들의 이익에 기반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사회적인 소수자, 약자로서의 청소년의 권익을 위해 자신의 한 표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주어지지 않는다. 교육정책이 청소년들의 희망과는 전혀 동떨어진 방향으로 나아가도 구경만 할 뿐이다. 청소년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면 입시위주 교육, 학벌위주 교육의 현실도 지금 같지는 않을 것이다. 000 / 대전 00고 1학년

따져묻기 2 : 스무살, Before and After?

어른들은 - 이미 나도 그네들의 기준에 의하면 청소년을 규제하는 모든 장소에 거리낌 없이 출입할 수 있는 어른의 나이가 되어 있지만 - 법으로 정해놓은 ‘만 20세 이상’이라는 제한선 위와 아래를 지나치게 심하게 구분 지으려 드는 경향이 있다. 예를들어보자. 청소년들은 신용카드를 가질 수 없다. 만 20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정한 수입이 없고 ‘분별력 있는’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른들은 청소년들의 손에 신용카드 쥐어 주는 것을 무척이나 꺼린다. 그러면 어른들은 그만큼 분별력을 갖추고 이성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까?

실상 20세라는 선 위로 올라섬과 동시에 성인이라는 이름표를 달면 그 즉시 돈을 쓰는데 있어 엄청난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아래에 있는 아이들이 돈을 쓰는 것에 있어 굉장히 민감하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일정한 수입이 없어 변제 능력이 없다며 본인 명의로는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해 놓았다. 솔직히 말해서 여기까지만 놓고 보자면 별 문제가 없는 얘기인건 하다.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이 부모님에게 기대지 않고 일정한 수준의 수입을 보장받는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며, 신용카드가 그 자체로 화수분이 아닌 다음에야 대금을 변제 받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도 않은 청소년들에게 마음껏 카드를 발급해 준다는 자체가 무리일 수 있다.

우스운 것은 똑같은 수입원이 없는 대학생들에게는 이 합리적인 판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길을 지날 때면 커다란 인형이나 전화기 따위를 앞에 세워 놓고 “카드 하나 만드시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과 많이 마주쳤다. 그 앞에 커다랗게 걸린 플랜카드에는 ‘대학생도 발급가능’이라는 문구가 빠지지 않았다. 청소년들에게 신용카드가 허락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일정한 수입원 없음’은 아닌 모양이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그 잘난 ‘분별력’인데, 갓 스물을 넘긴 대학생에게는 있고 청소년들에게는 없는 성숙한 소비의 능력이란 도대체 어느 순간 갑자기 생겨난 것일까. 발모제 광고지에서 만나는 ‘Before and After’ 못지않은 그 극명한 대비는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일까.

돈을 버는 능력과 돈을 쓸 줄 아는 지혜는 반드시 부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연일 신용카드 빚 때문에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어른들이 뉴스에 등장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단순히 만 20세를 넘었고, 성인의 날을 지났다고 해서 정신적으로 바로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성인이라고 해서 청소년의 소비 의식보다 반드시 나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철든 아이와 철 덜든 어른. 그 차이를 구분지어 줄 가시적인 잣대는 없다. 군복무까지 마치고 나온 대학생들이 신용카드 빚에 허덕이다가 살인까지 불사하는 범행을 저지를 수도 있고, 여러모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규모 있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성인’과 ‘청소년’을 스무 살 생일을 경계로 구분지어 놓고 한쪽을 무조건 어린아이로, 다른 한쪽을 무한책임의 어른으로 가정하는 일처럼 폭력적이고 어리석은 편 가르기가 또 어디 있을까.

000 / 충북 청주 000

따져묻기 3 : 수무살, Before and After?

나는 우리스쿨이라는 사이트의 운영진이다. 이 사이트는 발언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발언권 신장을 위한 장소이다. 아직 커다란 사이트는 아니지만, 나는 이 사이트가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장소라는 점에서는 어느 커다란 토론사이트 못지않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꼭 논제를 제시하지 않아도 좋다. 누구든지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만 있다면 된다. 여태까지의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장소가 그리 많이 제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스쿨에서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루려고 노력하지만, 내가 이 사이트를 통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청소년의 주체성에 관한 것이다. 학교에서는 특하면 자아정체성을 지녀야 한다고 말하며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 자아정체성이라는 말은 가정 시간에도 등장하고, 사회 시간에도 등장하며, 도덕 시간에도 지겹도록 등장한다. 그렇다면 어른들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나는 어른들과 대화할 때 “자유는 어른이 되어서 누려도 늦지 않다”는 식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이런 말은 학교에서도 듣고,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듣고, 여하튼 수많은 어른들에게 듣는다. 어른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을 동등한 주체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자신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한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낸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주체가 아닌 이유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찾고, 어떤 사람은 청소년의 보편적인 수준에 관해서 이야기하며, 또 어떤 사람은 나이를 들기도 한다. 자아정체성은 주체적 삶을 살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그렇다면 자아정체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주체적 삶을 강조하는 것이 된다. 어른들은 참으로 이상하다. 수업 시간에는 ‘자아정체성’ 운운하며 능동적인 인간상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청소년이 능동적인 인간으로서 발언하고자 할 때면 억누르려 한다. 청소년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른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그러나 모든 인간은 주체이다. 청소년들은 어른들이 아무리 객체로 취급하고 싶다 해도, 아직 완벽히 성숙하지는 못했다 해도 동등한 한 몫의 주체다.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은 교육자인 주체와 피교육자인 객체의 입장으로 만나 일방적인 내리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닌, 교육자인 교사와 피교육자인 학생이 주체 대 주체로 만나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숙해 가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건 마찬가지이다. 가정이든, 학교든, 나아가 사회든, 이 모든 것들은 주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산해 나간다.

상대를 객체로 만들어 버린다면, 서로의 만남이 서로에게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원하지 않는 것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가르치는 교사가 아무리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부어넣은들의 의지가 없는 학생들에게는 짜증스러운 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진정 훌륭한 인간을 키워내기 위한 교육이라면, 청소년을 객체로 취급하면서 수동적인 삶을 통해 주체성의 목록을 습득하라고 시킬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주체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주어야 하지 않을까. 사실 이 글을 쓰면서 하고 싶었던 말은 단 한마디였다. 청소년도 어른들과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이 주체라는 것. 비

록 학교라는, 교육이라는 어른들이 만들어 낸 틀 속에서 사회의 여러 면모들을 익혀 나가고는 있지만, 청소년은 어른들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움직이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 말이다. 모든 사람들은 어리숙하든 똑똑하든, 성숙하든 미숙하든, 어린이도, 청소년도, 장년도, 노인도 모두 주체이다. 인간은, 주체이다. 000 / 부산 00중 3학년

따져묻기 4 : 내 몸은 내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신체의 자유를

두발 검사하고 소지품 검사하는 위대하신 대한민국의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선생님, 학생들 엄색 금지하면 저절로 성적이 올라가나요? 두발제한 안하면 학생들이 다 호스트바나 다방으로 몰려가나요? 한 집단의 규약은 그 집단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있는 거겠지요. 하지만 그 규약이 ‘질서유지’의 선을 넘어서면 그건 그냥 ‘노예계약’인 것 아닌가요?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의 미적기준을 강요하지 마세요. 학생들은 저마다 다른 미적 기준을 가지고 있고, 저마다 다른 생각이 있어요. 우리 몸은 우리들 자신의 소유예요. 자신의 몸은 자신이 알아서 가꾸고, 다듬어야 돼요. 우리는 원래 누려야 했던 자유를 되찾고 싶어요. 우리가 직접 찾지 않는다면 아무도 찾아 주지 않겠지요. 물론 그냥 “네, 네” 하면서 편하게 살 수도 있겠지만, 그건 노예의 삶이겠지요? 우리 몸을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 가꿀 수 있는 자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신체의 자유’도 누리지 못하며 사는 우리에게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라”고만 말씀하시면 안돼요. 000 / 경북 000중 3학년

따져묻기 5 : 청소년은 무성의 존재 ?

요즘 청소년들 중에는 실제로 성관계를 가져 본 사람들도 많다. 그 만큼 현실은 성에 대해서 열려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어떤가? 실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여학생을 퇴학시켰다는 학교의 얘기도 들었다. 왜 청소년에게는 ‘성’이 허락되지 않는 것일까? 문제는 ‘청소년인식’이라고 생각한다. 청소년, 정말 ‘불’이다. 언제나 ‘불완전 인간’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닌다. 왜 청소년이 불완전 인간인지 납득 가는 설명도 없다. 단지 밥그릇 수 차이난다는 이유만으로 ‘민중’도 못 받고, 담배도 못 사고, 면허도 못 따고, 거의 대한민국 제2국민 취급을 받는다.

섹스는 말 그대로 ‘애정행각’이다. 남녀가 몸을 부대끼며 서로간의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일에 왜 어른들의 ‘지도’를 받아야 할까? 겁나는 것이 미혼모의 증가와 그로 인한 사회문제라면, 섹스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피임교육을 제대로 해 주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걸 모르는 걸까? 사회적으로 음성화되어 있는 것들을 양지로 끌어내면 그것들은 자연적으로 사라지거나 사회에 맞게 적응한다. 그리고 음지에서보다 양지에서 물의를 덜 일으킨다. 제도가 그것들을 감시하고 보호하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성을 양지로 끌어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어른들이 늘 외쳐 대던 ‘생명을 창조하는 신성한 성’도 더 빨리 실현되지 않을까? 000 / 000고 1학년

따져묻기 6 : 나에게는 나를 망가뜨릴 권리가 없었다.

고등학교 때, 친척 동생에게 우연히 내가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이 알려진 적이 있었다. 동생은 내가 변했다며 실망을 했고, 나는 오히려 그 애의 반응에 놀라 버렸다. 한동안 만난 적이 없던 동생은 당시의 나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었지만 단지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언니가 아주 나쁘게 변했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가끔 속이 답답할 때 한 대씩 피우면 기분이 풀어지기도 하고, 몸에는 나쁘지만 한밤중에 별을 보며 담배를 피워 물고 이 생각 저 생각 더듬는 재미가 나에게는 훨씬 더 소중한다고 설명하면서 나에게 그

애가 생각하는 ‘담배나 피우는 애들’의 이미지를 씌우지는 말아 달라고 이야기했다. 동생은 알겠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껄끄러운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런 동생을 보면서 나는 더 마음이 불편해져 버렸다.

동생은 그 전까지 담배를 피워 본 적도, 담배를 피우는 친구와 사귀어 본 적도 없었다. 그 애가 가지고 있던 ‘담배 피우는 애들’에 대한 이미지는 무조건 외우는 수학공식처럼 주입된 것이었다. 아마도 그 애뿐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비슷한 이미지를 품고 살게 되었을 것이다. 어른들이 말하는 ‘망가짐’의 길을 걷게 될까 봐 무조건 두려워하면서, 정말 자기에게 나쁜 것이 뭐고, 자기가 망가지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자유라는 게 원래 있었다는 것도 까먹은 채 말이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가는 길에 대해 하나하나 올바른과 그름의 판정을 내려준다. 성공한 인생이 하나 있으면 그와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본인의정신적인 만족도와는 관계없이 ‘망가진 인생’이 돼 버린다.

우리는 자기 경험에 의해 사물을 스스로 정의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럴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게끔 자라왔다. 하지만 그런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판단과 행동을 계속되고, 결국 결과와 책임이 따라온다. 그것은 훈수를 두던 어른이 아닌 판단한 본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아 버린다.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해서 충실히 학교를 다니고,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뻘하게 취직하여 가정을 꾸리고, 겉보기에는 멀쩡한 삶을 살았지만, 그 안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죽은 셀러리맨의 삶을, 훈수를 두며 잘난 척했던 그 전세대의 어른들은 책임져 줄 수 있나? 결국, 사람은 개인의 경험으로 변해 가야하고, 생각은 자연스럽게 그것에 따라가야 하는 것이다. 막을 수 있는 권리는 그저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도 결국은 자신이 할 일이다. 아이들이 어른의 시선의 의지하지도 말고, 어른들이 아이들의 경험에 끼어들려는 생각도 말아야, 어른들은 비로소 진정 아이들이 올바로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에게 망가져 볼 자유를 주자. 그래야 그들의 삶이 망가지지 않는다. 000 / 경기 안양

다) 절대적이며 상대적인 청소년악마사전 (중등 우리교육 2002년, 청소년 성장을 금지당한 아이들 중에서)

청소년 : 법적 책임 능력을 부여하기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 단지 법률 행위에 일정한 제한을 가할 필요에 의해 설정된 ‘미성년자’라는 가치중립적 개념을, 일체의 자율적·주체적 판단 능력을 부인하는 사회 문화적 관습과 교묘하게 절충하여 가치 지향적 개념으로 재구성해 낸 상징조작,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헌법상의 기본권, 특히 사생활권의 핵심적 내용이 부인되며,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보호’를 빙자한 타인의 간섭 속에서 생활해야 하는 존재. 흔히 ‘미래의 주인공’과 같은 사탕발림이 상징조작의 슬로건으로 동원되곤 하지만, 이는 절대로 ‘현재의 주인공’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사회적 소수자를 겨냥한 폭력적 의지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낼 뿐이다.

비행청소년 : 일부 청소년의 일탈적 범죄행위가 대중 매체의 선정적 보도에 힘입어 사회적 충격을 야기할 때 사회적 전시 효과를 노려 급조되는 정치적 이벤트의 희생양. 주로 ‘머릿수 채우기’식으로 지목되어 소명 또는 변호의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일탈자로 낙인 찍혀 학교 등 사회의 공식 영역에서 추방당하며, 그로 인해 사회의 비공식 영역에 차별적 편견의 대상으로 방치된다. 자율 이미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해져 있는 규범을 자발적으로 내면화되도록 강요하기 위한 말장난, 정해진 규범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진정한 자율적 의사결정은 자율의 범위를 벗어난 방종으로 간주된다. 예) 복장, 두발자율화, 자율학습 등

중독 : 자신도 무척이나 즐기고 싶지만 스스로의 비겁함으로 인해 감히 누리지 못하는 취미를 다른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즐기고 있을 경우 그것을 질투하여 이르는 말.

또는 낮은 것에 대해 극도의 경계심과 극단적인 거부감을 보이는 문화적 보수주의가 지배적인 사회에서, 특히 기성세대와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청소년층의 문화적 취향에 대한 유치한 낮가림의 표현으로 활용되는데, 그 자체로는 타인에게 아무런 피해를 끼치지 않는 개인의 취향에 대해 마치 커다란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양 겁을 주려는 의도가 들어있다. 유의어) 변태, 예) 인터넷 중독, 게임중독 등

가출 : 인격적 무시를 비롯한 부모의 학대, 가정폭력, 기타 더 이상 가족과의 공동생활을 감당할 수 없게 하는 여러 가지 사유로 사회적으로 공인되는 독립의 시기보다 일찍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생계를 확보하는 행위. 독립적 생활 능력이 사회적으로 부인되는 탓에 일탈 행위로 간주되지만, 오히려 그러한 편견으로 인해 사회공식 영역에서의 생활이 철저하게 봉쇄된다. 이는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최저 생계를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미를 개별 가족에게 전가하려는 거대한 사회적 음모를 반영한다.

청소년보호법 : 사회문화적 환경이나 인격적 성숙과는 아무상관도 없는 생물학적 연령을 기준으로 특정 사회집단의 의사결정능력 및 판단력을 부인하려는 사회적 음모를 제도적으로 공인하기 위해 제정된 법. 비단 청소년뿐 아니라 ‘청소년 보호’를 구실로 성인들의 생활 문화까지 통제하려는 권력의지를 유감없이 드러내기도 한다.

보호 : 개인 간 혹은 사회집단 간, 심지어 국가 간에 힘의 불균형이 있을 때 강자가 약자의 자결권을 침해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 생활(개인 간), 문화적 관습(사회 집단 간) 혹은 내정(국가 간)에 간섭하기 위해 내거는 명분.

소비향락문화 : 현란한 광고를 앞세워 노골적인 ‘10대 시장공략’에 골몰하는 기업들과, 광고주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상품들을 매개로 형성되는 소비문화를 세련된 눈요깃거리로 포장하여 선동할 수밖에 없는 대중 매체의 합작품. 흔히 판단력이 미숙한 시기의 분별없는 유행 모방심리로 폄하되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매체환경이 만들어내는 문화적 기호를 매개로 형성된 커뮤니티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한 전략적 판단에 따른 선택 행위이다. 특정 문화상품의 소비 여부에 기반한 문화적 차이가 그 자체로 사회적 위계를 형성하는 한국사회 특유의 현상으로서, 성인 사회에서는 그 정도가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비난의 화살이 청소년 세대에 집중되는 이유는,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던 시기에 문화적으로 개방되어 있지 못한 환경에서 조악한 문화상품을 접한 것이 고작이었던 불우한 세대들이 훨씬 다양하고 풍요로워진 그들의 문화적 환경을 질투하기 때문이다.

집단 따돌림 : 학연·지연 등 전근대적 연고에 따른 폐쇄적·배타적 집단주의에 기인한 한국사회 특유의 폐악. 이러한 배타성은 여성·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는 가족이기주의의 심리적 기반이 된다. 가정·학교·사회에서 이를 일상적으로 보고 듣고 배운 청소년 세대들이 모방·추종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성세대가 이를 비판하고 질타할 도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탓에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세대 재생산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학교 : 군대와 감옥의 비인간적인 특성만을 끌어 모아 놓은 제도적 폭력기관, 학생은 단지 ‘판단력 미숙하다’는 편견을 근거로 언제나 일탈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력 범죄자로 취급되며, 이를 감시·예방

하는 것이 학교가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이다. 취학 연령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관리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은 그 자체로 일탈로 간주되어 아예 존재 자체가 무시되는 극단적 배제에 직면한다.

권장도서목록 : ‘점수 따는 기계’ 노릇에 방해만 되는 독서행위를 억제하고 독서 의욕을 저하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재미없고 따분하며 교과서가 가르치는 천편일률적인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도서만을 선별한 목록. 최근 입시 제도의 변화로 인해 폭넓은 독서에 대한 억압적 금기는 상대적으로 완화되기는 했으나 오히려 그로 인해 이른바 ‘교과서 외의 지문’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텍스트를 제시하여 여전히 ‘점수 따는 기계’ 노릇을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로나 활용될 뿐, 책을 읽는 주체가 자기의 내재적 자유를 스스로 발견하는 기쁨이나 그것을 마음껏 발현하려는 욕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유의어) 건전비디오

극기 훈련 : 획일적 통제의 대상에게 가하는 극단적인 형태의 신체적 테러. 사색적 성찰로 접근해야 마땅할 철학적 개념을 야만적 테러를 정당화하기 위해 알파하게 전용하는 전형적 사례. 이를 위한 상징조작으로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오래된 경구가 동원되기도 하지만, 이는 명백한 오용으로 알려져 있다. 원래 이 말은 고대 로마의 시인 유베날리스의 말로 알려져 있는데 그 원문은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까지 깃들면 바람직할 것이다.’이며, 신체 단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는커녕 오히려 고대 로마 말기에 만연하던 신체단련 열풍을 못마땅하게 여겨 비꼰 말로 “저 근육만 키우는 멍청이들이 생각도 할 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취지로 한 말이 정반대 의미로 오용되는 것이다.

공동체 의식 : 집단을 위해 개인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도록 강요할 때 동원되는 정치적 수사학. 개인의 특성은 일체 부인되며, 조금이라도 이를 내세우면 ‘이기주의’로 매도된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상대할 때보다 집단으로 묶어 놓는 편이 통제·관리에 유리하기 때문에 강조된다.

성교육 : 성기를 중심으로 생물학적 측면만을 부각시키는 교묘한 방법으로 성을 사회적 관계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봉쇄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만연한 성별적 편견과 왜곡된 성의식을 재생산하려는 정치적 음모. 청소년을 타인과 자기 나름의 사회적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인격적 주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든 신중하게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 위협시키는 태도가 주류를 이룬다. 때로는 성이 ‘사랑의 표현 행위’임을 애써 강조하는 내용이 담기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성기 접촉 및 이에 수반되는 행위라는 일반적인 정의를 전제할 뿐 아니라 특히 ‘사랑’이라는 이데올로기에 내포된 성별적 편견을 아무런 비판 없이 암묵적으로 수용하게 함으로써 성의 본질은 여전히 은폐된다. 이러한 일반적 정의를 무시하고 양성간의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성별적 편견을 바로잡으려는 내용은 성교육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라) 빅터 플랭클린 “죽음의 수용소에서” 중에서 (청아출판사)

- 비극 속에서의 낙관 -

매일 매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와 비슷한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고 있다. 나는 스스로를 ‘미래가 없는’ 세대라고 부르는 젊은이들을 생각해 본다. 이것은 한 나라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인데, 그런 젊은이들이 위안을 얻은 것이 담배가 아니라 마약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사실 마약 문제는 이보다 더 보편적인 집단현상, 즉 현대 산업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인 실존적 욕구의 좌절에서 나오는 삶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의 일면을 반영하는 것이다. 삶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정신병의 발병요인에서 점점 더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단 로고테라피 치료 전문가들만이 아니다. "가장 최근에 빈에서 실시된 통계조사를 보면 전체 인구의 29퍼센트가 자신들의 삶에서 의미가 실종되었다고 호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특히 현재 실직 상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본다. 지금으로 부터 50년 전에 나는 소위 '실업으로 인한 신경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젊은 환자 중에서 특별한 종류의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책으로 출판한 적이 있다. 그 책에서 나는 이런 신경질환이 두 개의 잘못된 의식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일자리를 잃게 된 것을 자신이 쓸모없는 인간이 되었다는 것과 동일시하고, 쓸모없게 되었다는 것을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과 동일시한다는 것이다.

한 개인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이 원인이 되는 실업 신경질환화 함께 정신의학이나 생화학적 조건이 원인이 되는 또 다른 유형의 우울증이 있다. 따라서 정신치료와 약물치료는 각각 별도로 실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삶이 무의미하는 생각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 자체가 병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점, 자기가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어떤 신경질환의 표시나 징후라는 점을 간과하거나 잊어서는 안 된다. 비록 병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병적인 증상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잠재적으로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다는 말이다.

간단하게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집단적 신경 증후군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이 증후군이 보여 주는 세 가지 단면, 즉 우울증, 공격성, 약물중독이 로고테라피에서 말하는 실존적 공허감, 즉 허무하고 무의미하다는 생각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증거들은 무수하게 많이 있다.

- 사랑의 의미 -

사랑은 다른 사람의 인간성 가장 깊은 곳까지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사랑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본질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 사랑으로 인해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과 개성을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그 사람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볼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사랑의 힘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도록 함으로써 이런 잠재능력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우리나라 청소년참여의 진단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참여에 따른 산출물을 찾아내기 매우 어렵다. 2012년까지의 청소년 삶의 주인으로의 역할은 내적으로도 행동적으로 모두 열악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 스스로에게 참여획득에 대한 동기부여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진다. 향후 몇 년간, 아직 오랫동안 안 될 수도 있으리라 보여 지기도 한다. 아무튼, 현재 청소년의 삶은 '대학입시', '경직된 가족문화', '학교문화' 등에 있어서 청소년참여에 대한 논의와 공의는 삶의 화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우리나라의 청소년참여 역사를 볼 때 몇 가지 단서와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3.1운동, 광주학생운동, 4.19혁명, 6.29선언

등의 우리나라의 현대사속에서 청소년참여를 통한 역사적 물줄기를 바꾸어가는 결정적인 역할들을 수행하여 왔다. 최근, 월드컵의 성공적 응원의 힘도 청소년의 참여라 보기도 하다. 이에 청소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새로운 청소년의 사회구성원으로 참여세상이 이루어 질 수도 있다고 본다.

○ 청소년참여위원회

제2차청소년육성5개년계획부터 시작된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를 통한 참여위원회의 설치를 권장하고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기능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봉착하여 진전하지 못하는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몇 가지 한계에 보여주고 있다. 1) 지역단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제한적 활동범주의 설정(기존 권력과 힘에 의한 조정아래 놓여있음), 2) 지역단위 활동을 위한 청소년역량의 한계도달(시간적·경제적·조정능력한계), 3) 선발의 대표성에 대한 문제(지역단위 청소년의 선발이 아닌, 추천·위촉 등의 설발절차의 비민주성) 등의 상황에 놓여있다.

○ 청소년특별회의

2004년부터 시작된 특별회의는 당초 원대한 계획과는 차이가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국 청소년 및 지도자들의 현장목소리와 변화에 대한 의지를 담을 수 있었어야하나, 현재까지는 특별회의라는 허울(틀)에 얽매어 전혀 그 내용과 의미를 채우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최근 사회적으로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하지, 매년시행계획을 격년시행으로 스스로 축소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청소년들의 전국적 규모의 의견 집결과 의사표명에 대한 법적으로 보장된 통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청소년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

2001년부터 시작한 시설청소년운영위원회는 2004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정시 법조항으로 포함되어 나름대로 구체적인 정책 사업화하여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지역사회청소년들 스스로 지역사회의 청소년수련시설의 주인의식을 갖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시간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최근 정책적 관심저하 및 효과적 지원미비로 인하여 전반적 운영 위축 및 시설간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각종 자발적 운동

2002년 이후, 우리나라의 자발적 청소년운동의 싹이 조금씩 싹트고 있다. 두발자유운동, 종교자유운동 등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다. 2006년에는 민주노동당을 통하여 청소년인권법이 국회에 상정, 2008년 촛불운동 등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은 법적으로는 매우 선진적으로 잘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청소년들의 삶의 현장에 있어서의 수용과 적용의 측면을 볼 때, 매우 초기단계로 볼 수밖에

없다. 이제 청소년들의 참여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이 조금씩 청소년들의 몸으로 느끼고 있는 시기로 보아야 하겠다.

3) 몇 가지 청소년참여의 선진사례

가) 독일 청소년 사회참여³⁾

독일기본법 7조에 따르면 “누구나 개인적으로 또는 공동체에서 고충에 대한 불만이나 부당함, 청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독일에서의 청소년 사회참여는 인권단체, 환경단체, 평화단체, 정치단체 등 독일사회 전 영역을 가로질러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연방적, 지역적 차원에서 실제로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청소년 단체들의 공통적인 사항은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정치·사회 참여에 대한 장려와 권고에 있다.

○ 참여사례1 : 독일

☆ 녹색당과 연합90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을 위한 청원위원회’

“불만이나 부당함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라는 로고가 보여주듯이, 녹색당과 연합90은 청소년의 인권보호와 사회참여를 주도하기 위해 다양한 길을 제공하고 있다.

－ 청원위원회 : 청원권은 청소년, 어른 할 것 없이, 또 어떤 국적을 가졌던 간에 누구에게나 개방되어있는 기본권입니다. 법조인처럼 법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이도 연방의회, 주의회, 각 도시 자문회, 유럽의회 등과 같은 시민의 대표단에 직접 청원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연방의회나 그 외의 기관에 보낸 청원서나 고발, 제안 등에 대한 답장을 받게 된다.

－ 청원위원회는 국적에 관계없이 독일에 거주하는 모든 청소년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다. 단지 청원은 녹색당과 연합90이라는 정당의 차원에서 접수된다. 각 지역구에 설치된 지부를 통해 청소년들은 학교문제, 지역문제, 환경문제, 인권문제 등을 개별적, 단체적으로 청원할 수 있다. 청원 위원회에 고발되거나 접수 된 문제들은 녹색당과 연합90을 통해 주제별로 수렴되어 제기된 문제의 중요성, 시급성에 따라 각 지역차원, 주차원적, 연방차원 순으로 다루어지게 된다. 지역의회나 독일연방 의회의 의제에서 선택된 문제나 주제들은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전제되며, 정책심의과정에서 이들의 발언에 대한 우선권이 주어진다. 여러 가지 참여에 대한 청원내용들은 이에 대한 문제저과 제안점이 청소년의 ‘눈높이’로 청원되고 논의된다.

☆ 독일 청소년 의회’

독일 청소년의회 목적 : 청소년 의회의 목적은 청소년들이 직접 사회적, 정치적 참여와 가능성을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정치적 권리를 정책적 차

3) 2005, 한국형 청소년옴부즈만제도, 청소년교육전략21, P72~79

원에서 어떻게 이슈화하고, 스스로 문제해결 방안을 찾으며, 지역사회의 정책결정 과정에 자신들의 요구를 대변·관철시키는지 배우게 된다. 각 도시에 있는 청소년 국회의 의원들은 매년마다 베를린에서 열리는 연방청소년 국회 모임에 참석하여 독일 전 지역에서 온 청소년 의회 의원들과 만나 다양한 워크숍을 갖는다. 또한 독일연방의회를 방문하여 민주주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정책결정과 심의과정을 배우며, 이를 통해 자신들의 사회적 참여와 정치적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나간다. 특히 국가적, 지역적 차원의 정책결정에 있어 청소년의 권리와 관심이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 의회나 청소년대표를 통해 정책결정에 같이 참여한다. 독일의 청소년 의회는 각 지역, 도시마다 다양한 형태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 의회는 지역의회에 속해 있는 청소년위원회의 권고와 도움을 받지만, 그 독립성은 엄격히 보장되어 있다.

* 인겔하임 시 청소년의회⁴⁾ 의회운영조항

- 제1조, 청소년 의회는 의회의 형식을 취해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정치·사회 참여를 유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청소년 국회는 민주주의 형식으로 계획되고 실천된다. 청소년의회는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 어떻게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조정하고 정책을 결정하는지 경험한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들은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정치적 권리와 의무를 배우게 된다.
- 제2조, 청원의 권리 : 청소년 의회는 위원회를 구성할 권리를 갖는다.
- 제3조, 정보권 : 청소년 의회는 지역·지방의회에 참석할 권리를 갖으며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 제4조, 청소년위원회 : 청소년 의회는 각 지역의 청소년 위원회와 긴밀한 협조하에 운영된다.
- 제5조, 청소년참여 : 청소년 의회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청소년들은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참여할 수 있다. 단 연령이나 주거지역, 의회에 참여하는 청소년 숫자의 현황에 따라 참여는 제한될 수 있다.
- 제6조, 청소년 의회에 참가할 수 있는 연령제한 : 15세에서 20세 사이의 모든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다.
- 제7조, 인겔하임시에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이나 18세 이상의 독립생활을 하는 청소년들은 인겔하임시의 청소년 국회에 참여할 수 있다.
- 제8조, 의회참여 청소년들의 국적 : 모든 국적의 청소년들은 참여할 수 있다.
- 제9조, 청소년 의원의 숫자 : 청소년의회는 최대 30명으로 구성된다. 안건을 심의·결정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 제10조, 청소년 의원 숫자의 균형 : 남·녀 구성 비율이 일치하도록 한다.
- 제11조, 조직의 형식 : 청소년 의회의 조직은 청소년 의원들이 토론과 심의를 통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다. 청소년 의회는 고유의 조직과 형식을 갖는다.
- 제12조, 입법의회 : 청소년 의회는 회기는 1년이다. 새로운 입법의회는 봄에 다시 시작한다.
- 제13조, 총회 : 총회는 청소년 의회의 최고 기관이다. 총회는 공동의장과 분과, 실무팀을 뽑는다. 총회는 분과, 실무팀, 개별적인 청소년 의원들의 신청이나 청원들을 결정한다. 총회는 다양한 프로젝트, 지출, 예산 등에 대해 권고할 수 있다. 총회모임은 최소한 1년에 세 번은 열려야 하며, 분과들에 의해 소집될 수 있다. 또한 20명의 의원들이 총회모임을 요구할 때도 가능하다.
- 제14조, 선거 : 선거는 청소년위원회에 의해 조직되며 실행된다. 각 분과, 실무팀, 의장은 매년마다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 제15조, 분과 : 청소년의회는 다양한 분과들을 스스로 구성할 수 있다. 분과들은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사

4) 인겔하임시는 라인강에 위치한 마인즈 비엔시의 작은 위성도시이다.

향과 안전을 편성, 실행할 수 있으며 청소년 의회의 총회에 예산을 올릴 수 있다.

제16조, 공동의장·부의장 : 청소년 의회의 공동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모든 조직을 관할한다. 부의장은 의장의 임기가 다하면 의장직을 승계할 수 있다. 매년마다 부의장은 투표를 통해 새로이 선출된다. 의장의 임기는 1년이다.

제17조, 사무국 : 사무장은 청소년 의회의 업무조화와 행정을 위해 청소년 위원회의 보호를 받는다.

제18조, 회계 : 청소년 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산하의 회계담당을 따로 둔다. 예산은 각 지역의회에서 책정되며, 이 예산은 청소년 의회가 독자적으로 관리·지출한다. 회계감사는 지역의회에서 담당한다.

제19조, 영향 : 청소년 의회는 각 지역의 정책사항이나 결정에 같이 참여한다.

☆ 독일 청소년들의 정치·사회참여 단체'

독일에는 약 90개 이상 전국규모의 청소년 조직이 활동하고 있으며, 독일 청소년들의 약 1/4정도가 이러한 전국규모의 청소년 조직에 구성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대표적인 단체들은 다음과 같다.

그루테 유겐트, 그리네 유겐트 헤센, 유에스오에, 융에유니온, 디 팔켄, 융에 데모크라티넨 등은 대표적인 청소년 정치참여 단체이다. 이 단체들은 크게 정당들과 연계된 조직과 독립적인 조직으로 나누어져 있다. 특징은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의 강화와 정치적 권리의 법적인 보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위의 단체들은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와 더불어 국가, 유럽, 세계에 대한 정치, 사회적 인성을 키워주는 학교 밖의 교육의 장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독일 청소년 중 25%가 한 조직에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 사실은 독일 청소년의 사회참여가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다는 점 역시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나) 일본 청소년 사회참여 (가와사키 사례중심: 가와사키 아동·청소년회의⁵⁾)

- 가와사키시 아동·청소년권리증진의 노력

가와사키 아동·청소년 회의는 초등학교4학년(10세)~고3(18세)까지의 아동·청소년들 중 희망자들(자격제한 없음)로 이루어진 '청소년위원회'의 성격을 띤 모임이며, 1984년 '아동·청소년회의'를 시작으로 1997년 '아동·청소년꿈공화국'을 거쳐 2001년에 지금의 명칭으로 확정되었다.

조직은 사무국과 8개의 분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무국은 가와사키시 교육위원회 소속의 공무원과 퇴직한 교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분과는 집회·제언·꿈과크·환경·복지·학교·가와사키·세계아동조례분과로, 각 분과는 분과장 1인과 분과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각 분과장은 희망자에게 맡기지만 의장은 구성원 전체의 투표를 통해 선발되며, 그 임기는 1년간이다. 일반 분과원의 임기는 정해져있지 않으며, 19세가 되어 위원회에서 탈퇴하게 되어도 희망할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에서 주관하는 10회의 교육을 거쳐 '서포터'로서 활동할 수 있다.

'가와사키 아동·청소년 회의'의 구성·활동에 있어 가장 큰 특징은 '제언(提言)' 분과라고 할 수

5) 푸른희망군포21실천협의회, 2005년 연수보고서 중에서

있다. 제언분과는 1년간 위원회에서 거론된 것들을 취합하여 시장에게 제언을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는 아동·청소년권리에 관한 조례에 규정한 ‘참가의 권리’를 실천하는 것으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시장은 아동·청소년회의에서 제언한 사항을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제재가 없기 때문에 제언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하지만 아동·청소년들이 직접 시장에게 제언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의 의견 표명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 가와사키시 아동·청소년권리담당(川崎市子どもの権利担当)

가와사키시청에서 아동·청소년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는 총 4개소가 있다. 시민국(市民局)의 아동·청소년권리담당, 청소년육성과(青少年育成課)와 건강복지국(健康福祉局)의 아동담당, 보육담당이 그것이다. 그 중 아동·청소년권리담당에서는 「가와사키아동·청소년권리에 관한 조례」를, 청소년육성과에서는 방과후 공부방을, 아동담당에서는 아동상담소를, 보육담당에서는 어린이집을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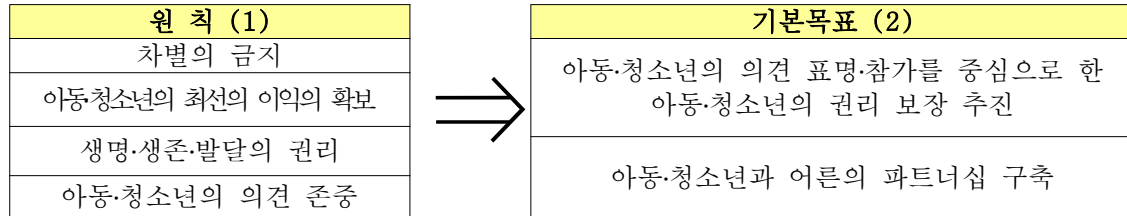
가와사키시에서 「가와사키아동·청소년권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당시 시장의 지시 때문이었다. 1989~2001년까지의 가와사키 시장은 교원노조의 위원장 출신으로, 그는 교원노조의 지속적인 제언에 힘입어 조례 제정을 지시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직접적인 배경 외에도 가와사키시의 지역적 특징이 큰 역할을 했음은 확실하다. 가와사키시는 재일(在日) 한국인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 중의 한군데이다. 가와사키시에서는 1986년경부터 재일 한국인의 인권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특히 아동·청소년의 교육 인권에 대한 부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거기에 시청 공무원노조·교원노조·교통노조·수도노조 등이 연합하여 정책 제안을 위한 총괄연구소로 ‘(사)가와사키 지방자치연구센터’를 발족함으로써 조례 제정의 지역적 기반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1998년에 조례 검토연합회를 구성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가와사키아동·청소년권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박차를 가했고, 약 200회 이상의 협의 끝에 2000년 12월에 조례가 제정되었다.

조례는 2001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조례시행 3년이 지난 2004년 3월, 가와사키시 아동·청소년의 의식조사가 시행되었다. 그리고 그 위에 시민들의 의견을 모집,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같은 해 11월에 「가와사키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행동계획(川崎子どもの権利に関する行動計画)」 초안을 공표하였다. 그리고 총 6회의 사전 포럼을 거치고 난 지난 2005년 3월, 가와사키시는 ‘아동·청소년의 의견표명 및 참가’를 골자로 하는 「**가와사키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행동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의 목적은 ‘가와사키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조례’에 기초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모든 정책에 아동·청소년의 권리의 시점(視點)을 도입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권리의 보장을 종합적 및 계획적으로 도모⁶⁾하는 것이다. 또한 이 행동계획은 크게 세 가지의 성격을 지니는데, 첫 번째는 아동·청소년의 의견 표명·참가를 추진하는 것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종합적 및 계획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시의 목표 및 대처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아동·청소년의 생활 방면에서의 권리 보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역에 있어서 시민·시민단체 등과 연계, 협동을 목표하는 것,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가와사키 신(新)종합계획을 시작으로 ‘가와사키 차세대육성지원 대책 행동계획’ 및 ‘가와사키 교육플랜’ 등 시(市)의 여러 가지 계획과의 어울림⁶⁾을 도모하는 것이다.

6) 원래 뜻은 ‘여러 다른 의견들 사이에 모순이 없는 것, 딱 떨어지게 잘 맞아 들어가는 것’ 등을 의미한다.

또한 이 계획은 네 가지의 원칙하에 수립되었는데, 그 원칙 및 상세 내용은 다음 도식과 같다.

[가와사키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행동계획]



중점사항 (3)
①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의식 향상
② 아동·청소년의 의견 표명·참가의 촉진
③ 의견표명·참가가 어려운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중점시책(4)	
중점 사항 ①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계발·홍보
	아동·청소년에 의한 계발·홍보 지원
	아동·청소년 자신이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배우기 위한 권리학습 지원
	보육·학습시설에서의 아동·청소년의 권리학습을 지원하는 사람에의 지원
중점 사항 ②	「함께 학습해나가는 학교만들기」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의견표명·참가를 촉진
	아동·청소년의 처우에 관한 중요한 수속의 결에서 본인의 의견 표명 기회 보장
	보육원에 있어서의 아동·청소년의 의견표명·참가 촉진
	주로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서의 아동·청소년의 의견표명·참가 촉진
	시정, 지역, ‘마을 만들기’에의 아동·청소년의 의견표명·참가 촉진
	아동·청소년의 자유·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건 정비를 추진
	권리침해로부터의 구제, 회복에 있어서의 아동·청소년의 의견표명·참가에 관한 지원
중점 사항 ③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동·청소년의 의견표명·참가에 관한 지원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의 의견표명·참가에 관한 지원
	아동 양육·보호 시설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의견표명·참가에 관한 지원
	비등교 아동·청소년의 의견표명·참가에 관한 지원
	유아의 의견표명·참가에 관한 지원

시(市)에서 이 행동계획을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지역 전체 구성원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시는 시민(혹은 시민단체)·아동 및 청소년·시청의 세 주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행동계획을 추진해나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3. 청소년참여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운영위원회의 활성화

지역사회구성원으로의 당당한 청소년의 자리매김

청소년의 역사적 고찰을 통하여 보았을 때, 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증진은 복지적 측면에서 주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소중한 인격체로서의 자기 주장 속에서 발현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 안에서의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의 청소년 제자리 찾기 노력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시작단계인 지역사회 내에서의 청소년참여근거 확보와 노력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하도록 한다.

1. 지역사회중심의 청소년 참여의 의의

청소년의 성장은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가정, 학교 및 사회의 장에서 행하여 지지만 가정이나 학교가 충분히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제휴, 협력이 필요하다. 지역사회는 사회생활이 전개되는 무대일 뿐만 아니라 인간을 형성하는 교육적 작용을 하고, 직접 교육이 진행되는 장이다. 다시 말하면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적, 문화적, 인간적 자원은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교육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의 연대감이 희박해지고, 기성인들이 지역사회에의 협력이 약해지고 있으며 사회의 교육력은 감퇴되어 왔다. 또한 청소년의 정서에 유해한 영상매체와 인쇄매체 등이 증가함으로써 청소년을 둘러싼 지역의 환경도 악화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적 특성을 상실하고 오늘날에 이르러는 유해환경이 만연한 장이 되고 있으며, 단순한 주거 및 생활공간으로만 인식되어 옴으로써 지역사회 조직과 시설의 활성화를 통한 청소년육성이라는 적극적인 기능이 결여되어 왔으며 청소년단체, 청소년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활동에 있어서도 해당지역 청소년들의 특성과 욕구에 기초한 지역사회 중심의 활동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가 청소년발달의 환경으로서 적절한 발달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고 청소년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 필요성은 특히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청소년활동이 지역사회와 연계가 점차 강조되고 있는데, 지역사회에 산재해 있는 청소년을 위한 사회자원과 서비스 운용의 중심점이 중앙으로부터 해당 지역사회로 환원되어 그 지역 청소년들의 특성과 욕구에 부합되는 형태로 재편성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관련 기관, 단체와 시설들이 그 본연의 목적과 기능을 회복함으로써 청소년활동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볼 수 있다.

지역사회중심의 청소년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청소년문제를 단일한 사건이나 단일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적 맥락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단일한 대책이나 접근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청소년발달에서의 맥락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절한 부모역할, 가난, 유해한 대중매체의 영향, 부적절한 건강관리, 경제문제, 교육체계의 실패, 인종차별주의, 청소년기관 사이의 영토권갈등, 부적절한 정부정책 등이 청소년이 살고 있는 발달체계를 구성하는데 이 체계가 청소년문제를 생성하는데 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체계는 청소년문제의 원인이며, 동시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해결책과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문제행동 또는 발달문제의 해결책

은 개인, 가족, 지역사회 및 사회문화적 맥락의 수준에서 찾아진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사회중심 청소년활동 및 수행에 중요한 원리는 1) 청소년문제는 문제들 간에 상호연관성이 있어서 지역사회내의 패키지 서비스가 필요하고, 2) 개인을 변화시키기 보다는 체계를 변화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하고, 3) 예방적 개입이 치료적 개입보다 더 경제적이며, 4) 일회성 개입은 지속적인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연속적 프로그램이 유지되어야 한다.

2. 지역사회내 청소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접근방안 (청소년수련시설의 거점화)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로서 자신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제 2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에서부터 시작하여, 현재 청소년복지지원법상에 ‘의사결정참여’라는 구체적인 조항으로 근거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청소년정책의 방향에 있어서도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중심의 정책을 방향으로 선정하고, 청소년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참여는 정책과정의 참여를 통하여 청소년의 삶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자신들의 주체적 삶을 실현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청소년의 긍정적인 기여가 가능한 측면도 있다. 특히 지역사회 내에서의 청소년문제와 청소년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의 전개에서 지역사회와 청소년의 공동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청소년이 청소년문제의 최대의 피해자이자이기 때문이다. 지역 청소년시설에서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정책참여 및 지역사회 참여의 기회를 갖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역청소년시설은 시·군·구 단위별로 지역청소년의 공식적인 참여수단이 되는 청소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청소년의 의견수렴과 정책결정과정 참여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생각해야할 만한 청소년위원회의 역할

- 첫째, 청소년수련시설에 본 기능유지 모니터링 (주인으로서의 감독)
- 둘째, 시설주인으로써의 시설운영활성화 (이용률 및 활용률 극대화)
- 셋째,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시 청소년의 의견반영
- 넷째, 시설운영위원회의 청소년참여지분 확보 (40%이상: 성인위원회 동등한 참여)
- 다섯째, 시설설비나 실내장식 등을 개선할 때에 청소년 의견수렴반영
- 여섯째, 청소년들로 구성된 동아리나 조직에 시설을 제공 및 지원시 의견반영
- 일곱째, 수련시설(수련관) 청소년지도사 채용시 의견반영
- 여덟째, 예산수립 및 결산회의에 참여 및 의견반영
- 아홉째, 지역사회 현안사안에 대한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참여 및 의견반영
- 열번째, 청소년시설 청소년운영백서 발간

※ 참고자료 1 (청소년헌장 다시보기)

청소년 헌장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간다.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

■ 청소년의 권리

1.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교육 등을 보장받아 정신적, 신체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출신, 성별, 종교, 학력, 연령, 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공포와 억압을 포함하는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사적인 삶의 영역을 침해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건전한 모임을 만들고 올바른 신념에 따라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배움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해 갈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일할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청소년의 책임

1. 청소년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이 선택한 삶에 책임을 진다.
1. 청소년은 앞 세대가 물려준 지혜를 시대에 맞게 되살려 다음 세대에 물려줄 책임이 있다.
1. 청소년은 가정·학교·사회·국가·인류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자기와 다른 삶의 방식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1. 청소년은 삶의 터전인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살아 간다.
1. 청소년은 통일 시대의 주역으로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익힌다.
1. 청소년은 남녀평등의 가치를 배우고 이를 모든 생활에서 실천한다.
1. 청소년은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며 조화롭고 평등한 가족문화를 만들어 간다.
1. 청소년은 서로에게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1. 청소년은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받기 쉬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 간다.

1998년 10월 25일

※ 참고자료 2 (청소년관련법을 통한 참여 근거)

1) 청소년기본법

제2조 (기본이념) ①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육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추진방향으로 한다. 1. 청소년의 참여 보장 2.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 3.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 4.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향상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청소년은 인종·종교·성별·연령·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2012.2.1 신설) ③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하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2012.2.1 신설) ④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청소년은 자신의 능력개발과 건전한 가치관의 확립에 힘쓰고 가정·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1] 제6조(가정의 책임) ① 가정은 청소년 육성에 관하여 1차적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통하여 청소년이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발전을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후계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가정은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청소년과 함께 참여하는 등 청소년을 바르게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가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해매체물의 접촉 등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가정의 무관심·방치·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청소년이 가출하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 친권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는 보호의무의 책임을 진다. 제7조(사회의 책임) ① 모든 국민은 청소년이 일상 생활 속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청소년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를 통하여 청소년을 이해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비행을 방임하지 아니하는 등 그 선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서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정화하고 유익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고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신설 2011.5.19)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책임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의2(교육 및 홍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②청소년 관련 기관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1]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 ①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육성 정책과제의 설정·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매년 개최하여야 한다. ②특별회의의 참석대상·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특별회의 개최) 관련조항 －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의 참석대상) : 1.특별회의의 지역단위회의에서 추천하는 청소년, 2. 청소년관련기관·단체가 추진하는 청소년, 3. 청소년관련 단체·시설·학계의 관계자, 4. 청소년위원회가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는 청소년, 5. 그 밖에 청소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청소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석대상을 정함에 있어 성별·연령별·지역별로 각각 전체 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방법 등) 특별회의는 지역단위의 회의를 거쳐 전국단위의 회의를 개최하며, 청소년 관련 토론회 및 문화예술행사 등과 병행 할 수 있다.

제14조(의제 통보) 청소년위원회는 특별회의의 의제를 선정하여 선정된 의제를 특별회의 개최 1개월 전까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의제선정·연구 등을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협조의뢰가능

제16조(청소년의 달)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청소년육성을 위한 국민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한다.

2) 청소년활동진흥법(청소년운영위원회 관련법 중심)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①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관련조항 －

제3조(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1. 10인 이상 20인 이내구성, 2. 임기1년 연임가능, 3.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 청소년복지지원법(청소년우대 중심)

제3조(청소년의 우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문화시설·여가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청소년에게 그 시설의 이용료를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보조를 받는 자
2. 관계 법령에 따라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4조(청소년증) ①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4) 아동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조(정의)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호대상 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증진 ~ ③ ~ ‘장애아동 권익’ ~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①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어린이에 대한 사항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옹고 아릅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1일부터 5월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

5)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참고자료 3(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정보)

□ 청소년수련시설(수련관 중심) 설치 및 운영관련(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수련관을 설치·운영 시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 제23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자의 배치 등) :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은 1급청소년지도사 1인, 2급청소년지도사 1인, 3급청소년지도사 2인 이상을 기본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청소년수련관의 수용정원이 5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인을 초과하는 250인 마다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인 이상을 추가로 두어야 한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 청소년수련시설 내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2005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정을 통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법적근거(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관 운영에 반영하게 하고 있으며, 청소년운영위원회는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청소년으로만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 하며, 읍·면·동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7조(시설기준) : 공통기준과 개별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청소년수련관의 공통시설기준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입지조건으로는 일상생활권, 도심지근교 및 그 밖의 지역 중 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이어야 하며, 둘째, 건축물 구조에 있어서 시설 및 기구설비 등이 청소년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고 장애인을 위한 배려를 하여야 하며, 수용정원에 적합한 면적과 구조로 하여야 한다. 셋째, 설치기준에 있어서 개별기준이 정한 시설설비를 따라 주변 환경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존·활용하여야 한다. 넷째, 관리실·사무실·안내시설 등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수련시설의 종류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섯째, 동일 건물 또는 당해 시설 안에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가 있어서는 안 되며, 설치예정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에는 유흥주점 등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청소년수련관의 개별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건축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둘째 1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집회장,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2개소 이상의 자치활동실, 2개 이상의 특성화수련활동장, 1개소 이상의 상담실, 1개소 이상의 휴게실, 1개소 이상의 지도자실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수용정원⁷⁾에 적합한 화장실 및 세면장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방송설비 및 공중전화를 갖추어야 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안전기준) : 청소년수련관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는 제출받은 안전결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운영대표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또는 시설의 보완 및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도 있게 되어 있다.

7) 청소년수련관의 수용정원 산정방법은 체육활동장과 특성화수련활동장에 해당하는 시설(실내시설)을 일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적정인원을 말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9조(운영기준)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는 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의 시설 운영안전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련거리운영 및 생활지도시설관리운영종사자교육 등도 별도 운영기준에 따라 준수하여야 한다. 수련시설의 운영기준은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수련활동운영, 둘째, 생활지도, 셋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으로 구분되어 있다.

○ 수련활동 운영영역

- 수련거리별로 추구하려는 구체적인 목적이 명시되어야 함
- 수련거리는 청소년지도사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함
 - 수련거리의 실시에 있어서는 청소년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참작하여야 하며, 수련거리에 강제로 참여하게 해서는 안 됨
- 인증 받은 수련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함

○ 생활지도

-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음주흡연행위를 금하여야 하며, 성인이라 하더라도 흡연은 정해진 장소에서 하도록 하고, 음주 등으로 인하여 당해 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지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음주자 등 수련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함
 - 수련관 내 급식소를 설치운영할 경우 청소년들의 자립정신의 배양을 위하여 자급식 운영을 원칙으로 함
-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폭행이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청소년의 탈선을 방지하고 타인으로부터의 위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시설의 관리 및 운영

- 수련시설등록증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함
- 시설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수용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하여서는 안 됨
 - 수련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당한 경비 외의 부당한 수수료 또는 금품을 받거나 수련시설이용자의 유치 등을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됨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2조(보험가입) : 청소년수련관은 보험에 가입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청소년수련관 운영대표자는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8)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표는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안전관리체계 및 교육, 둘째, 토목부분, 셋째, 건축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움을 주신 분들

김 동 규 (금촌청소년문화의집 관장)
김 제 원 (대구수성구청소년수련관 국장)
김 지 수 (군포당동청소년문화의집 관장)
박 찬 열 (홍은청소년문화의집 관장)
서 영 우 (대구달서구청소년수련관 국장)
윤 희 선 (부산금정구청소년수련관 부장)
이 승 렬 (서울금천구청소년수련관 관장)
이 은 경 (광명시립오름청소년문화의집 관장)
이 현 주 (원주시청소년수련관 관장)
황 수 주 (광주북구청소년수련관 국장)
황 윤 미 (부산함지골청소년수련관 국장)

2012 전국청소년운영위원회 워크숍

인 쇄 2012년 8월 7일

발 행 2012년 8월 7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계문사 전화 02)725-5216 대표 류운현

본 자료집의 무단 전재·복제를 금합니다.